경상북도

도보
www.gb.go.kr

선람	기관(부서)의 장

제6450호 2020년 7월 9일(목)

경 상 북 도

■ 조 례

○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52호) ····· 8

회람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53호) ····· 10

○ 경상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54호) ····· 15

○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55호) ····· 21

○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56호) ····· 27

○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57호) ····· 29

○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 폐지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58호) ····· 30

○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59호) ····· 31

○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60호) ····· 33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61호) ····· 36

○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62호) ····· 39

○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63호) ····· 42

○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64호) ····· 47

○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65호) ····· 50

○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66호) ····· 57

○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67호) ····· 59

○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68호) ····· 63

○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69호) ····· 65

○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70호) ····· 68

○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71호) ····· 71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72호) ····· 74

■ 규 칙

○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규칙 제2959호) ····· 78

■ 고 시

○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217호) ····· 85

○ 문경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218호) ····· 88

■ 공 고

○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경상북도 공고 제2020-1361호) ····· 107

○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1362호) ····· 109

시 군

■ 고 시

○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고시 제2020-200호) ····· 111

○ 문경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공원-모전5-2 어린이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문경시 고시 제2020-120호) ····· 113

○ 문경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문경시 고시 제2020-121호) ····· 118

○ 의성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의성군 고시 제2020-90호) ····· 122

○ 성주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 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성주군 고시 제2020-64호) ····· 148

■ 공 고

○ 도시계획시설[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경주시 공고 제2020-1587호) ····· 154

○ 구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완료 공고
(구미시 공고 제2020-1138호) ····· 157

기 타

■ 고 시

○ 하천점용허가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327호) ····· 160

○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329호) ····· 161

■ 공 고

○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위반 과태료 예고서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미소방서 공고 제2020-9호) ····· 163

◈◈◈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7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4352호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 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 등을”을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자문하여야 한다”를 “자문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 등부터 적용한다.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7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4353호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개선 및 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경제발전과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는 제8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상권 활성화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자치조직 구성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6. 중소유통물류센터 설치 등 유통시스템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이하 “소상공인 창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9.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및 육성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의 신용보증과 경영안정 및 개선 지원
3.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4.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및 지방세 감면
5. 전자화폐,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 등 정보통신기술 이용 및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6.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7.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피해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상담센터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5.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6.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소상공인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경상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 각 호의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사업

2. 업종별 특화 창업모델 발굴 및 확산

3. 자영업 업종별 전문 컨설팅 지원단 운영

4. 과밀업종 분산과 경쟁으로 인한 수익감소 방지를 위한 업종별 현황 등 통계정보 제공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련 단체 설립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날 개최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7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4354호

경상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특화거리 지정과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2.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특화된 공간(거리 및 상가를 말한다)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정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특화거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특화거리 추진 목표 및 방향
2. 특화거리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특화거리 지정)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상권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내 일정 지역(1킬로미터 내외)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화거리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 내용을 경상북도 공보를 통해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특화거리 지정기준 등) ①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일정 지역에서 관련 업종 2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의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와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특화거리 지정신청 및 결정) ①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해당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거리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을 검토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신청서등과 시장·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정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특화거리 지정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상권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 기능을 잃은 경우
2. 심각한 위생·품질문제 등 관리 소홀이 확인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사업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부족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특화거리 사업평가) ①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평가 세부기준은 제11조에 따른 상권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특화거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특화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및 디자인 개발사업
3.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홍보·교육사업
4. 그 밖에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상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특화거리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특화거리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권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상권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권 활성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7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7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4355호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연료전지 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수소를 제조·포집·정제·저장·운반·충전·판매하는 사업

나. 연료전지를 이용한 발전사업과 관련된 제품 또는 장비 등을 제조하는 사업

3. “연료전지”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연료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소의 생산시설·수소연료배관시설 및 수송수단 또는 연료전지발전시설 등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수소특화단지”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사업 및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소·연료전지 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수소·연료전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도내 수소·연료전지 산업과 국내외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4. 연료전지 검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구축 및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연료전지,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6. 수소·연료전지 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7.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수소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소·연료전지 산업과 관련된 정책 조정·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에너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수소·연료전지 산업의 육성) 도지사는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사업

3.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

4.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 사업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사업

5.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의 생산시설 구 축 사업

6. 수소·연료전지 산업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7.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 사업

8.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도지사는 수소·연료전지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연료전지 산업 관련 기술개발 기업 지원

2. 수소·연료전지 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연료전지 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수소·연료전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연료전지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연료전지 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②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창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소·연료전지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2. 수소·연료전지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 사업

3. 도내 공공기관, 공사·공단, 주택 등 연료전지 보급 지원 사업

제9조(연료전지 이용 권고) 도지사는 수소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수소·연료전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연료전지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시·군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내에 설립된 공사·공단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에 설립된 의료원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나 시군이 출자·출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

5.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을 신규 또는 재건축하는 자. 다만, 연료전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기업 유치 및 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수소·연료전지 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부 보급사업 등의 추진 시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기

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홍보) 도지사는 도내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 교육 및 홍보
2.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7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4356호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경상북도보”를 “도보”로 한다.

제17조의2,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시 · 군 보조금사업의 기준보조율 등) ① 도지사는 시 · 군의 보조금에 대하여는 대상사업 · 경비의 종목 · 도비 보조율 및 금액을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시 · 군에 대한 분야별 보조금 예산편성 시 적용하는 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은 30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정여건 및 보조사업의 특성상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의3(시 · 군비 부담의무) 시장 · 군수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 · 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시 · 군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 중 “제30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7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4357호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7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4358호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 폐지조례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7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4359호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하 “자립지원아동”이라 한다) 이란”을 ““자립지원아동”이란”으로, “아동을 말한다”를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이하인 자”를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또는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자립지원아동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자립지원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자립수당의 지원

제7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문화ㆍ예술ㆍ체육 지원

제10조제2호 중 “아니한”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의2(종전의 제2호) 중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자3 학부모”를 “학부모”로 한다.

2.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자

제16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7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4360호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역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생활치료센터”란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을 격리하여 생활 및 의료지원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원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도지사가 구성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제11조로

하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역학조사) ① 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은 영 제15조 및 제16조를 따른다.

③ 도지사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 은폐하는 행위

제12조(생활치료센터의 지정 및 설치 · 운영) ① 도지사는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환자 등이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할 경우, 전문인력 및 장비의 확보, 의료용품 및 구호물품의 비축 등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할 경우 사전에 생활치료센터 운영

자와 지정 및 설치 · 운영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생활치료센터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방역관) ① 도지사는 방역관을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 · 군수와 협의하여 감염병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도내 시 · 군 보건소 별로 방역관이 임명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방역업무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방역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역학조사관) ① 도지사는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 소속 공무원으로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 다만, 도지사는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 · 군수와 협의하여 감염병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역학조사를 위하여 시 · 군 보건소 별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제공요청 등)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라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경찰법」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7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4361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무단히”를 “무단으로”로, “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별표4”와 같이 한다.”를 “별표 4와 같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으로, “당해공무원”을 “해당 공무원”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지급하고”를 “지급하는 것으로”로 한다.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 중 “부상외의”를 “부상 외의”로,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참”을 “지각”으로, “병가일수에는 이를”을 “병가는 병가 일수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요양을 요하는”을 “요양이 필요할”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병가일이 7일 이상일”을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제2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을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하지 않음.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7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4362호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하여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 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경상북도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5. 전문 이스포츠 육성 · 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전문인력 양성

3.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도지사는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 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7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4363호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상북도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산업에 따른 유 · 무형의 이익이 관광목적지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에게 공정하게 분배 · 환원되어 주민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전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주민 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5.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지원계획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공정관광 상품의 평가 및 인증 사업

6. 공정관광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

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 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 및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공정관광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경상북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도지사는「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경상북도위원회실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도내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7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4364호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2.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 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 등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관리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 ① 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른 소득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업용 취수시설
2.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환경정비구역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다만, 체험·실습과정상 오·폐수발생 시설(조리시설, 주방시설, 주거시설, 휴게시설 등)은 제외한다.
3.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자신이 설치한 버섯재배사에서 채집한 버섯을 분말로 가공할 수 있는 시설(1가구당 66제곱미터 이하, 건조·단순 파쇄시설만 해당). 다만, 가공과정에서 오·폐수발생시설(세척시설 등)은 제외한다.

② 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어린이집, 주민운동장
2. 주민자치센터
3. 소규모 공동목욕장(비영업용)
4.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다만, 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 1개의 2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장으로 한정한다.
5.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저장능력 3톤 미만)
6. 주민복지회관(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다만, 음식물 조리 및 제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

하로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7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4365호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정원을 통하여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 · 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 · 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 · 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4. “시민정원사"란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 · 관리 및 보전 · 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5. “박람회"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 정책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 · 개발 ·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도지사는 생활권 내에 도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지방정원, 어린이정원, 스마트 가든 등 정원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주거 및 생활환경 등이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문화 기반 마련 지원) 도지사는 모든 도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도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 정책의 추진

제7조(정원진흥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등을 위해 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정원진흥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과 관련된 시책 및 추진계획
3.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 장려에 관한 사항
5.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관련 국제 교류 ·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 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사업) 도지사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 · 진흥 및 정원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 · 수집 · 보급 및 관리

2.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 · 학 · 연 공동연구

3. 정원 및 정원문화산업의 조성 · 관리 · 전시

4. 유휴부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숲 조성

5. 정원과 정원창업을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6. 국내외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7. 정원 및 정원문화산업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8. 정원 및 정원문화산업에 관한 간행물 발간

9.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10. 정원 및 정원문화산업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11. 정원문화 캠페인의 추진

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민간정원의 개방) 도지사는 법 제18조의6에 따라 도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4장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참여의 지원

제10조(도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도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1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생활권 중심으로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도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도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도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 법인 ·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 실습 등 교육과정을 개설 ·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양성,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을 적극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민간 교육과정의 지원) 도지사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도지사는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정원사업(이하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전개할 수 있다.

②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주민대상 정원관련 교육 및 컨설팅

2. 정원 관련 도서, 장비 및 용품 대여

3.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 · 보존 및 전시

4. 그 밖에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의 전문성 ·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사업과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박람회

제16조(박람회의 개최)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박람회의 평가) ①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 · 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18조(포상) 도지사는 정원문화 진흥 ·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 법인 ·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7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4366호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체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체나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다 징수한 경우
2. 검사·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 의뢰인이 취소하는 경우
3. 검사·시험 등에 적합한 기기, 방법, 기준 등이 없어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4. 검사·시험 등을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형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검체를 시험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의뢰인이 반환청구 한 경우

제8조(시험결과의 광고 및 표시) ① 제2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자가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전문(全文)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경상북도 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7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4367호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고등학교 3학년 대입수험생 및 졸업예정자에게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 구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입수험생”(이하 “수험생”이라 한다)이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및 동등자격을 가지고 도내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대학교 또는 상급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위해 입학시험원서를 접수한 자를 말한다.
2. “졸업예정자”란 제1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해당년도에 학업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다음해에 해당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

3. “농수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나.「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

다.「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농산물가공품

4. “지역농산물”이란 도내에서 생산 · 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도 지역에서 전시 · 유통 · 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복지교환권”이란 수험생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의 구입에 이용할 수 있도록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지역농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6. “복지교환권 지역주관처”(이하 “지역주관처”라 한다)란 복지교환권을 제공하는 부서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복지교환권사업을 운영하도록 위탁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 방향) ① 도지사는 수험생의 건강권 확보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복지교환권(이하 “교환권”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수험생과 졸업대상자는 교환권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역주관처는 도내 수험생과 졸업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지역농가소득 향상을 위

하여 다양한 농산물소비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교환권의 지원대상은 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험생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 범위 등) 도지사는 수험생과 졸업예정자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 구매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환권 및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방법)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 · 군을 통해 운영하거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교환권 지원사업의 위임이나 위탁의 경우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정적 · 재정적 절차는「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와「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교환권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환권을 받은 경우
2. 교환권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8조(권장사업 실시) 도지사는 교환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험생의 건강유지를 위한 신선한 식재료의 공급과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 전시 등의 농산물소비촉진 활동
2. 건강한 먹거리 선택방법과 섭취법 등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과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3. 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농산물의 현물제공

4. 교환권의 이용과 관련된 경비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 위임)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권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 · 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평가) ① 도지사는 교환권사업을 수행하는 시 · 군과 지역주관처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실시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평가단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7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4368호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산물”이란「수산업 · 어촌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의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4.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시 · 군이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의 확산 시책을 수립 · 시행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 및 농업인에게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연계 · 공유 등 정보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정보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7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4369호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공공분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라. 재난관리를 위한 물품(자재 · 장비)의 구입 및 임차

마. 지방자치단체 소유 · 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및 점검

바. 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지방자치단체가 소유 ·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보수 · 보강

사. 재난의 예방 · 대비 교육 및 훈련

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내 준설, 풀베기(당초 하폭 · 수심 유지)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 · 보강(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한다)

3. 재난 예보 · 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 · 보수 · 보강

4.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 · 보수 · 보강

5.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 · 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장비 ·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 · 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8.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9.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10.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11.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12.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민간분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위험시설 긴급안전점검. 다만,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로서 영 제74조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한다.

2. 제1호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사고 응급조치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호마목의”를 “제6조제1항제11호의”로 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위원의 수는”은 “위촉위원은”으로 하고 “되어야”를 “되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7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4370호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제50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58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1 중 제4호의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나. 농업용수: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다. 발전용수: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라. 그 밖의 용수: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별표 1의 비고란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에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6. 연간 전체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본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 점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점용료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제3조 관련)

구 분	감 면 대 상	감 면 율
점용료등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3. 국가기관 및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0퍼센트
	5.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100퍼센트
	6.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 경우	100퍼센트
	7.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8. 「하천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3호에서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등의 전액을 면제한다. 나.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등을 감면한다.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등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한다.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하천에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80퍼센트
하천수 사용료	1. 하천관리청이 「하천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소관 하천의 유지·보수 등 하천관리를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2.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내는 경우	100퍼센트
	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	100퍼센트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2020년 7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4371호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생에 대한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의 실시 및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인터넷중독”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0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내 학생들에게 법 제30조의8에 따라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2.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3.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 자원 활용 방안
4.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추진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교육감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주요시책
2.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3.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4. 그 밖에 인터넷중독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터넷중독 예방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2020년 7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4372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산압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 중 “경산시 압량면 압독2로 38”을 “경산시 압량읍 압독2로 38”로, 현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 중 “경산시 압량면 대학로 624”를 “경산시 압량읍 대학로 624”로, 사벌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 중 “상주시 사벌면 덕담1길 53”을 “상주시 사벌국면 덕담1길 53”으로 한다.

별표 2의 경산압량초등학교의 위치란 중 “경산시 압량면 압독2로 38”을 “경산시 압량읍 압독2로 38”로, 현흥초등학교의 위치란 중 “경산시 압량면 대학로 624”를 “경산시 압량읍 대학로 624”로, 사벌초등학교의 위치란 중 “상주시 사벌면 덕담1길 53”을 “상주시 사벌국면 덕담1길 53”으로 한다.

별표 3의 압량중학교의 위치란 중 “경산시 압량면 부적길 36-19”를 “경산시 압량읍

부적길 36-19”로, 울릉중학교의 위치란 중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323”을 “울릉군 울릉읍 사동2길 219”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도서 〈나지역〉의 울릉중학교의 위치란 중 “울릉읍 사동리 323”을 “울릉읍 사동2길 219”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유치원	【별표 1】 유치원
【별표 2】 초등학교	【별표 2】 초등학교
【별표 3】 중학교	【별표 3】 중학교

【별표 1】 유치원

명 칭	위 치
경산압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	경산시 압량면 압독2로 38
현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경산시 압량면 대학로 624
사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상주시 사벌면 덕담1길 53

【별표 1】 유치원

명 칭	위 치
----------	경산시 **압량읍** 압독2로 38
----------	경산시 **압량읍** 대학로 624
----------	상주시 **사벌국면** 덕담1길 53

【별표 2】 초등학교

명 칭	위 치
경산압량초등학교	경산시 압량면 압독2로 38
현흥초등학교	경산시 압량면 대학로 624
사벌초등학교	상주시 사벌면 덕담1길 53

【별표 2】 초등학교

명 칭	위 치
----------	경산시 **압량읍** 압독2로 38
----------	경산시 **압량읍** 대학로 624
----------	상주시 **사벌국면** 덕담1길 53

【별표 3】 중학교

명 칭	위 치
압량중학교	경산시 압량면 부적길 36-19
울릉중학교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323

【별표 3】 중학교

명 칭	위 치
----------	경산시 **압량읍** 부적길 36-19
----------	울릉군 울릉읍 **사동2길 219**

◈◈◈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7월 9일

경상북도 규칙 제2959호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심의”란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법(신기술 · 우수기술)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우수기술의 지정 · 등록을 위하여 실시하는 심의를 말한다.
2. “선정심의”란 위원회가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 및 우수기술 등의 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심의를 말한다.

제3조(선정심의)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선정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안건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심의를 요청한 발주부서의 장은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과 관련 책임 기술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 및 공법 설명과 관계 법령에 대한 적법 여부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우수기술의 지정·등록 신청)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수기술의 지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설명서(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2. 원가산정기준
3.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4. 그 밖에 우수기술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우수기술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우수기술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등록심의를 거쳐 해당 기술을 우수기술로 지정한다.

② 제4조에 따라 등록심의를 신청한 기술개발자 또는 보유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우수기술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우수기술의 등록)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우수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제16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1. 우수기술의 명칭
2. 우수기술 개발자 또는 보유자의 성명
3. 우수기술의 내용 및 범위 등

제7조(신기술의 등록) 신기술을 조례 16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법 선정심의 신청서

용 역 명 (공사명)	*설계는 용역명, 공사는 공사명 기재	용 역 사 (시공사/감리사)	*설계는 용역사, 공사는 시공사/감리사 기재
공법 적용 위치			
용역기간 (공사기간)		책임기술자 (현장대리인/책임감리원)	
설계금액 (공사금액)		특정(신기술) 공사비	
담당자 및 메일주소	*심의신청 부서 담당자와 Korea메일 기재	발주방법	*관급, 사급, 수의, 경쟁입찰
공사개요	* 전체 공사개요 기재		
특정 공법 적용분야 공사개요 및 기타 심의안건 요약	* 특정 공법 공사개요 및 심의요청 안건 현황 요약		
첨부: 특정 공법 심의자료, 후보군 공법 선정사유			

[별지 제2호서식]

우수기술 지정·등록 신청서

<table>
<tr><td>접수번호</td><td colspan="2"></td><td>접수일</td><td></td></tr>
<tr><td>특허번호</td><td colspan="2"></td><td>특허기간</td><td></td></tr>
<tr><td>기술명칭</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기술보유자
및 권리자
(법인)</td><td colspan="3">상호 또는 법인명</td><td>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td></tr>
<tr><td colspan="2">성명(대표자):</td><td>☎:</td><td>생년월일:</td></tr>
<tr><td colspan="4">주소</td></tr>
<tr><td>기술 내용
(별지작성가능)</td><td colspan="4"></td></tr>
<tr><td>기술의 범위</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등록분야</td><td>등록 지원분류</td><td colspan="3">(대분류) (중분류) (소분류)</td></tr>
<tr><td>검색 키워드(5개)</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우수기술 지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td></tr>
<tr><td>첨부서류</td><td colspan="3">1. 기술 설명서(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 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원가산정기준(원가계산서 포함)
※원가관리협회에 등록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
3. 시방서 및 설계도면
4. 특허증 사본
5. 그 밖에 우수기술 평가에 필요한 서류</td><td></td></tr>
</table>

[별지 제3호서식]

신기술 통합정보시스템 등록신청서

<table>
<tr><td>접수번호</td><td></td><td>접수일</td><td></td></tr>
<tr><td>정부고시번호</td><td></td><td>보호기간</td><td></td></tr>
<tr><td>신기술명</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기술보유자
및 권리자
(법인)</td><td colspan="2">상호 또는 법인명</td><td>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td></tr>
<tr><td>성명(대표자):</td><td>☎:</td><td>생년월일:</td></tr>
<tr><td colspan="3">주소</td></tr>
<tr><td>기술 내용
(별지작성가능)</td><td colspan="3"></td></tr>
<tr><td>기술의 범위</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등록분야</td><td>등록 지원분류</td><td colspan="2">(대분류) (중분류) (소분류)</td></tr>
<tr><td>검색 키워드(5개)</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4">「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td></tr>
<tr><td>첨부서류</td><td colspan="2">1. 기술 설명서(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 · 진보성 · 현장 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원가산정기준(원가계산서 포함)
3. 시방서 및 설계도면
4. 정부인증 신기술증서 및 특허증(특허등록공보 및 등록원부)
5. 그 밖에 신기술 등록에 필요한 서류</td><td></td></tr>
</table>

◈◈◈

경상북도 고시 제2020 - 217호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의성군 단북면 효제리 일원 농업자원관리원 확장이전에 따른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9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175,793,600	-	1,175,793,600	100.00	
도시지역	소계		32,583,000	-	32,583,000	2.77	
	주거지역	소계	3,977,016	-	3,977,016	0.33	
		제1종일반주거지역	3,555,901	-	3,555,901	0.30	
		제2종일반주거지역	264,578	-	264,578	0.02	
		준주거지역	156,537	-	156,537	0.01	
	상업지역	소계	525,785	-	525,785	0.04	
		일반상업지역	525,785	-	525,785	0.04	
	공업지역	소계	967,694	-	967,694	0.09	
		일반공업지역	776,755	-	776,755	0.07	
		준공업지역	190,939	-	190,939	0.02	
	녹지지역	소계	27,112,505	-	27,112,505	2.31	
		생산녹지지역	4,160,920	-	4,160,920	0.37	
		자연녹지지역	22,951,585	-	22,951,585	1.94	
관리지역	소계		351,580,982	증) 20,972	351,601,954	29.90	
	보전관리지역		141,967,212	-	141,967,212	12.07	
	생산관리지역		60,038,087	-	60,038,087	5.11	
	계획관리지역		149,575,683	증) 20,972	149,596,655	12.72	
농림지역			787,535,418	감) 20,972	787,514,446	66.98	
자연환경보전지역			4,094,200	-	4,094,200	0.35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1	의성군 단북면 효제리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0,972	100 이하	◦우량종자 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을 조성하고자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의성군청 지역재생과(054-830-634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끝.

경상북도 고시 제2020 - 218호

문경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문경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9일

경 상 북 도 지 사

문경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일반현황

가. 산업단지의 개요

○ 명 칭 : 문경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신기동 1136번지 일원

○ 면 적 : 439,691.5㎡

○ 사업시행자 : 문경시장 (문경시 당교로 225번지)

○ 관리기관 : 문경시장

나. 조성목적

○ 정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 지역내 중규모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 개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기 조성된 신기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하여 합리적·효율적 개발을 통해 지역산업의 체계적 관리 유도

다. 시행방법 및 기간

○ 시행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영개발

○ 기 간 : 2008. 02. ~ 2015. 12. 31.

라. 추진경위 (변경)

○ 2009. 04. 08 :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계획(안) 승인신청(문경시→경상북도)

○ 2009. 04. 10 ~ 2010. 05. 04 : 관계기관 협의

○ 2010. 06. 29 : 경상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통합심의

○ 2010. 08. 23 : 문경 신기제2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경상북도 고시 제2010-396호)

○ 2012. 12. 03 : 공사착공

○ 2013. 11. 11 : 문경 신기제2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경상북도 고시 제2013-468호)

○ 2014. 05. 26 : 문경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14-174호)

○ 2015. 12. 28 : 문경 신기제2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문경시 고시 제2015-113호)

○ 2016. 01. 21 : 문경 신기제2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경상북도 고시 제2016-71호)

○ 2016. 11. 21 : 문경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16-311호)

○ 2017. 04. 26 : 문경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변경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문경시 고시 제2017-44호)

○ 2017. 07. 06 : 문경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17-176호)

○ 2018. 12. 06 : 문경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8-363호)

○ 2019. 06. 19 : 문경 신기제2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문경시 고시 제2019-93호)

마. 분양현황 (변경)

(단위 : ㎡)

구 분		총면적	분양현황(㎡)			조성현황(㎡)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양	미분양	계	조성	미조성	계		
변경전	계	439,691.5	46,471.0	257,168.2	303,639.2	439,691.5	-	439,691.5	2008. 02. ~ 2015.	문경시
	산업시설 구역	287,717.2	46,471.0	241,246.2	287,717.2	287,717.2	-	287,717.2		

구 분		총면적	분양현황(㎡)			조성현황(㎡)			조성기간	조성기관
			분양	미분양	계	조성	미조성	계		
	지원시설 구역	15,922.0	-	15,922.0	15,922.0	15,922.0	-	15,922.0	12.31.	
	공공시설 구역	93,034.1	-	-	-	93,034.1	-	93,034.1		
	녹지구역	43,018.2	-	-	-	43,018.2	-	43,018.2		
변경후	계	439,691.5	155,505.1	148,134.1	303,639.2	439,691.5	-	439,691.5	2008. 02. ~ 2015. 12.31.	문경시
	산업시설 구역	287,717.2	151,745.3	135,971.9	287,717.2	287,717.2	-	287,717.2		
	지원시설 구역	15,922.0	3,759.8	12,162.2	15,922.0	15,922.0	-	15,922.0		
	공공시설 구역	93,034.1	-	-	-	93,034.1	-	93,034.1		
	녹지구역	43,018.2	-	-	-	43,018.2	-	43,018.2		

바. 입주현황(계획) (변경)

구 분	입주업체 수 (개)			면 적 (㎡)		
	제조업체	기타	계	제조업체	기타	계
계	40	-	40	287,717.2	-	287,717.2
2020년 현재	17	-	17	151,745.3	-	151,745.3
향후계획	23	-	23	135,971.9	-	135,971.9

※ 입주업체는 분양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입지여건(기반시설) (변경)

시 설 명	현 황	시행기관
교통	○ 중부내륙고속도로 점촌함창 I.C(10.0km), 문경새재 I.C(13.0km) ○ 국도 3호선(남측 3.0km), 국도 34호선(북측 0.2km)	

시 설 명		현 황	시행기관
단지내도로		○ 노선 : 16개노선 (대로 1, 중로 11, 소로 4) ○ 연장 : 4,496m (대로 337, 중로 3,991, 소로 168) ○ 면적 : 78,495.0㎡ (대로 9,977, 중로 67,247, 소로 1,271)	문경시
공원 · 녹지		○ 공원 2개소 : 8,241.4㎡ ○ 녹지 8개소 : 34,776.8㎡	문경시
용수	기정	○ 신기배수지에서 D=250mm(L=3.10km) 관로로 공급하여 산업단지에 인입 각 시설용지로 공급 - 계획용량 : 2,472㎥/일	문경시
	변경	○ 신기배수지에서 D=250mm(L=3.10km) 관로로 공급하여 산업단지에 인입 각 시설용지로 공급 - 계획용량 : 2,666㎥/일	
오폐수	기정	○ 산업단지 지구내 폐수종말처리장 처리 - 지구 동쪽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연결처리 ○ 발생량 : 1,571㎥/일 (오수 117, 폐수 1,454)	문경시
	변경	○ 산업단지 지구내 폐수종말처리장 처리 - 지구 동쪽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연결처리 ○ 발생량 : 1,590㎥/일 (오수 101, 폐수 1,489)	
폐기물		○ 14.143ton/일 - 생활폐기물 : 2.634ton/일 - 사업장폐기물 : 11.509ton/일 (지정폐기물 : 4.009ton/일) ○ 운영 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고, 나머지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관리 계획	-
전력		○ 공급능력 : 14,902kW/년 (점촌변전소에서 공급) (산업시설 12,180, 기타시설 2,722)	한국전력공사
통신		○ 수요량 : 1,477회선 - 산업시설 : 352회선 (4회/업체) - 지원시설 : 1,118회선 (0.02회선/1㎡) - 공중전화 : 7회선 (1회/500명)	한국통신
에너지		○ 열수요량 : 60,334Gcal/년 - 산업시설 : 56,007Gcal/년, 지원시설 : 4,327Gcal/년	-

시 설 명	현 황	시행기관
	○ 연료 수요량 : 6,142Gcal/년 - 산업시설 : 5,601Gcal/년, 지원시설 : 541Gcal/년	
주차장	○ 주차장 3개소 : 2,637.4㎡	문경시
저류지	○ 저류지 1개소 : 5,340.4㎡	문경시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가. 관리기본방향

○ 입주업무의 적극 지원에 의한 조업활동의 극대화 유도로 산업단지 생산성 제고

○ 업종별 전문화, 계열화 배치로 단지관리의 효율화

○ 깨끗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유지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단위 : ㎡, %)

총면적	세 부 면 적				비고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439,691.5 (100.0)	287,717.2 (65.4)	15,922.0 (3.6)	93,034.1 (21.2)	43,018.2 (9.8)	

※ 산업단지 용도별구역도 : 별첨 1, 용도구역별 면적표 : 별첨 2

다.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 「산업집적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입주기업체지붕에 한함)

2)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및 건축물

○ 입주가능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건축물

※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업, 종교시설 등 입주업체 지원활동과 연광성이 적거나 근로자 의욕저하 업종 및 기업형 대형판매점 등은 입주 불가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입주기업체지붕에 한함)

3) 공공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범위 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4) 녹지구역

○ 산업단지의 미관, 공해저감과 근로자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원용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

라. 입주관리계획 (변경)

1) 입주대상업종 (변경)

기 정 (13종)	변 경 (15종)
○ 식료품 제조업(1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의료 · 정밀 ·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전기장비 제조업(28)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기타 제품 제조업(33)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식료품 제조업(10)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13)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의료 · 정밀 ·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전기장비 제조업(28)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기타 제품 제조업(33)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숫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임

2) 입주업체자격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공장)으로 입주대상 업종

에 한함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지붕에 한함)

○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 규정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산업시설구역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단,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에 합당할 것)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지붕에 한함)

3) 입주업체제한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오염총량제 저촉시 공해업종 입주를 제한

○ 폐기물처리업 및 환경관련시설 등을 수반하는 업종 제한

○ 관리기관은 공해, 용수, 인접 업체영향, 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종(공정)의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본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취득(분양, 매매, 경매, 기타) 전

에 산업단지 입주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입주가능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4) 입주우선순위

○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큰 업체

○ 수출 유망기업으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체

○ 주변업체와의 계열화 전문화가 가능한 업체

○ 환경 친화적인 업체

※ 문경시에 기업투자 의향서 제출한 업체는 분양 심사시 우선 검토

5) 사후관리계획

○ 입주계약, 공장등록 등 공장건설과 가동에 필요한 행정적 업무 지원

○ 쾌적한 여건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원의 진입제한 및 저감대책 수립

○ 공장용지의 불법전매 및 임대 방지로 정상적인 제조활동에 사용하도록 관리

○ 분할할 경우 업체별 용지 최소면적은 1,650㎡이상(공장등록 완료 후 가능)이어야하며, 지분등기는 불가함

○ 입주 후 분할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면적을 1,650㎡이상으로 하고, 분할경계에는 고정식 담장을 설치하는 등의 조건 충족 시 가능

○ 일반 임대사업자는 산업용지 및 공장 취득이 불가

○ 임차공장은 최소기준 제조시설면적이 300㎡이상이어야 하며 임대공장과 지표에서 천정까지 고정식 경계벽으로 구분되어야 하나 별도의 공장동일 경우

에는 예외 적용

○ 공장건축면적은 「산업집적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범위에 따라 관리

6) 관리할 산업단지 면적

(단위 : ㎡)

총면적	세 부 면 적				비고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439,691.5	287,717.2	15,922.0	93,034.1	43,018.2	

마.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기정)

(단위 : 개, ㎡)

단지 및 업종 (중분류)	계		현 재		향후계획		비 고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계	40	287,717.2	5	46,471.0	35	241,246.2	
식료품(10)	4	39,671.0	3	33,059.0	1	6,61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2	56,720.6	–	–	2	56,720.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22)	2	15,560.5	1	6,612.0	1	8,948.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5	26,553.2	–	–	5	26,553.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3	12,266.5	–	–	3	12,266.5	
전자 · 통신(26)	3	22,258.0	–	–	3	22,258.0	
의료 · 기계(27)	3	20,105.9	–	–	3	20,105.9	
전기장비(28)	1	6,800.0	1	6,800.0	–	–	

단지 및 업종 (중분류)	계		현 재		향후계획		비 고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기타 기계 및 장비(29)	4	15,624.1	-	-	4	15,624.1	
자동차 및 트레일러(30)	5	27,655.6	-	-	5	27,655.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5	29,021.8	-	-	5	29,021.8	
기타 제품 제조업(33)	3	15,480.0	-	-	3	15,480.0	

※ 업종별 배치 계획도 : 별첨 3

(변경)

(단위 : 개, ㎡)

단지 및 업종 (중분류)	계		현 재		향후계획		비 고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계	40	287,717.2	17	151,745.3	23	135,971.9	
식료품(10)	9	62,080.8	8	54,589.0	1	7,491.8	
섬유제품(13)	1	8,264.5	-	-	1	8,264.5	
의복 및 모피제품(14)	1	8,264.5	-	-	1	8,264.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9	80,736.9	1	8,948.5	8	71,788.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22)	1	6,612.0	1	6,612.0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6	21,192.4	-	-	6	21,19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3	49,305.9	3	49,305.9	-	-	

단지 및 업종 (중분류)	계		현 재		향후계획		비 고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전자 · 통신(26)	1	2,746.9	-	-	1	2,746.9	
의료 · 기계(27)	1	2,674.6	-	-	1	2,674.6	
전기장비(28)	1	6,800.0	1	6,800.0	-	-	
기타 기계 및 장비(29)	2	15,572.5	2	15,572.5	-	-	
자동차 및 트레일러(30)	2	4,602.0	-	-	2	4,602.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2	8,946.8	-	-	2	8,946.8	
기타 제품 제조업(33)	1	9,917.4	1	9,917.4	-	-	

※ 업종별 배치 계획도 : 별첨 3

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1) 기본방향

○ 기업체 및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업종은 분양 · 입주 불가

○ 안마시술소, 여관,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업 등은 입주불가

2) 지원시설 설치계획

(단위 : ㎡, 개)

용 도	세 부 용 도 (시설명)	면 적	블 록 수
입주계약시 지정한 용도	생산업무 지원시설	15,922.0	5

3) 지원시설 관리운영

○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관리기본계획의 지원시설구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승인을 얻어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사.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리근거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과 환경영향평가, 분양공고문, 분양유의사항,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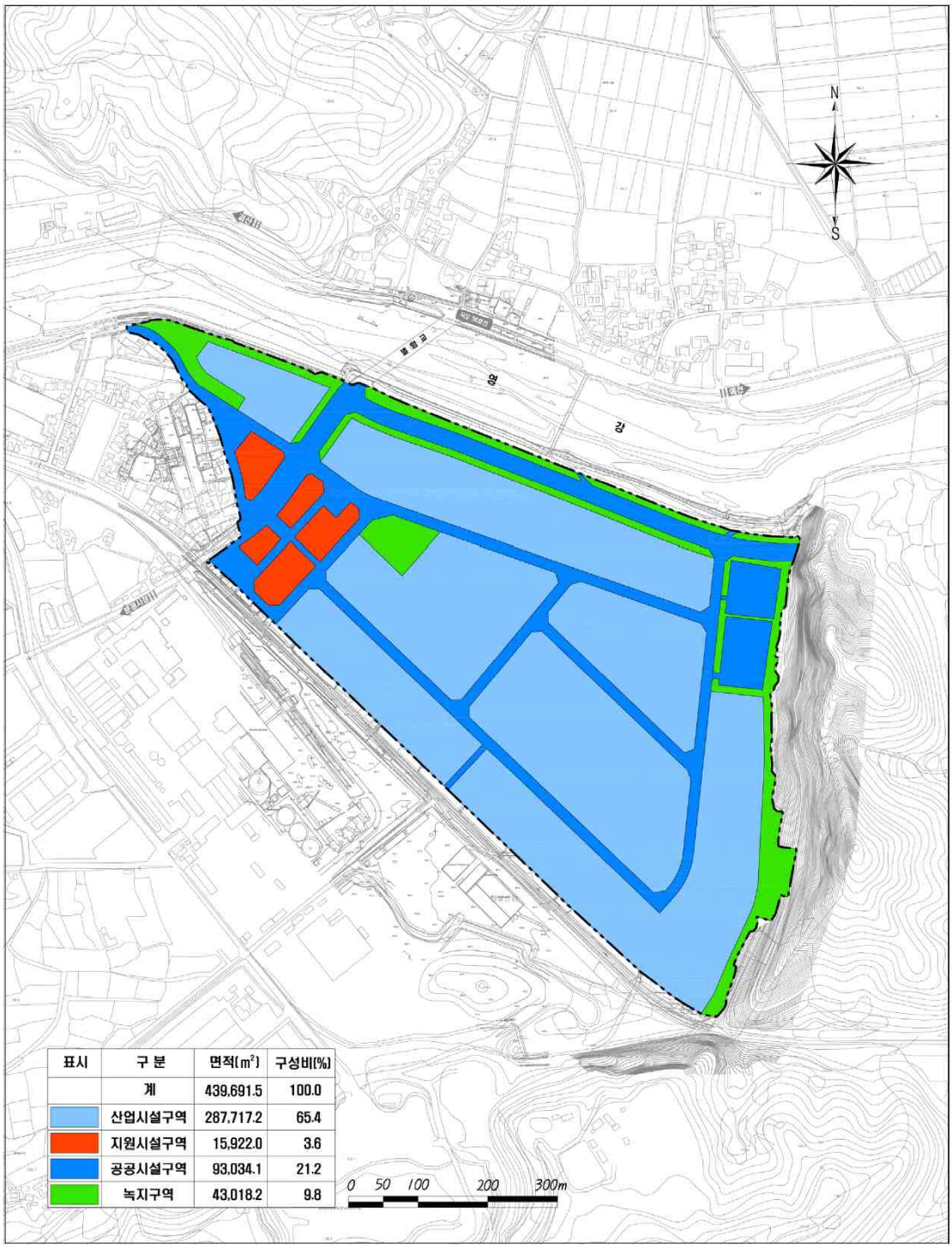
3.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문경시 일자리경제과(☎054-550-67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생략)

부 칙

이 관리기본계획은 고시함으로 시행한다.

【별첨 1】 용도별 구역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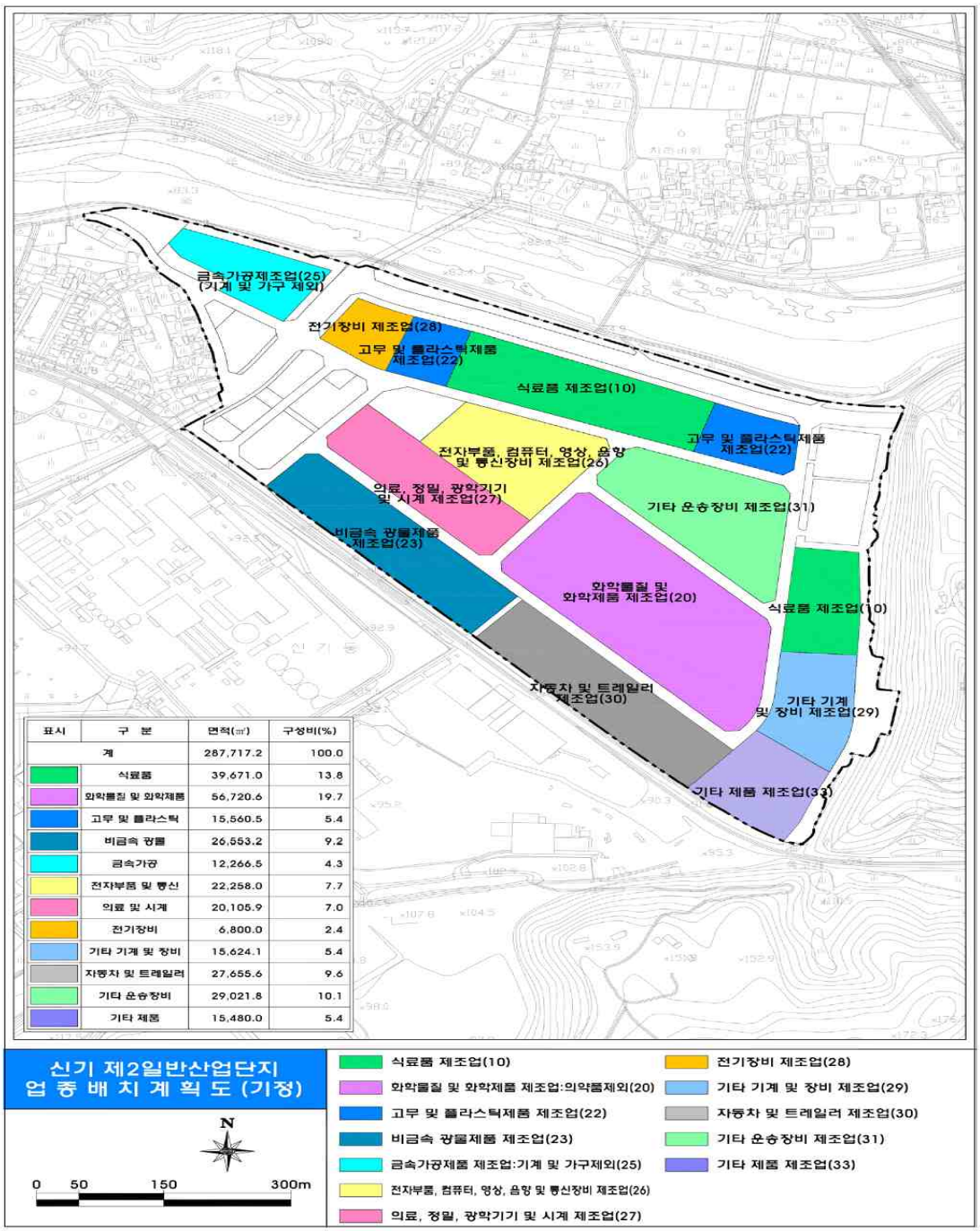
표시	구 분	면적(m²)	구성비(%)
	계	439,691.5	100.0
	산업시설구역	287,717.2	65.4
	지원시설구역	15,922.0	3.6
	공공시설구역	93,034.1	21.2
	녹지구역	43,018.2	9.8

【별첨 2】 용도구역별 면적표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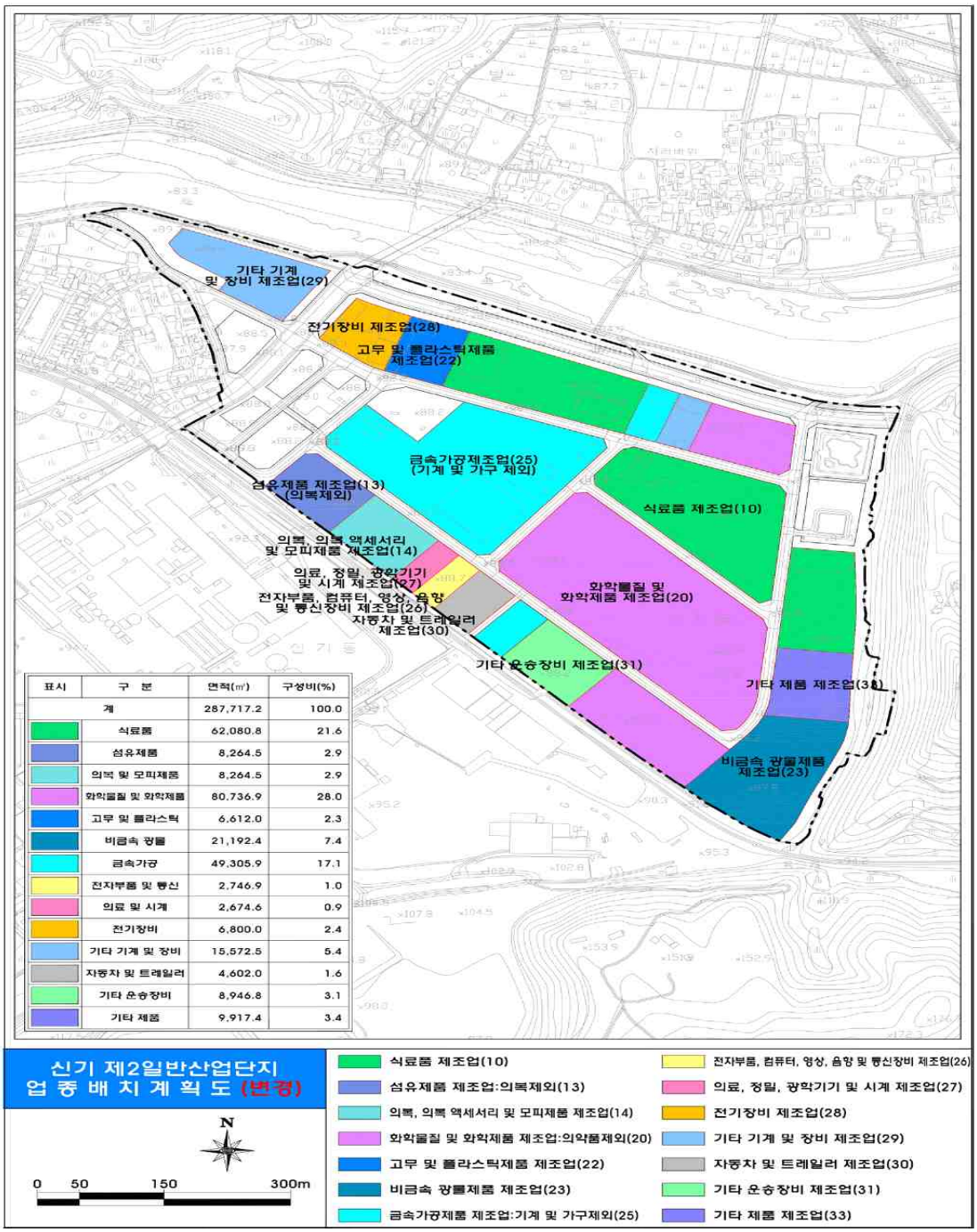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439,691.5	100.0	
산업시설구역		287,717.2	65.4	
지원시설구역		15,922.0	3.6	
공공시설구역		93,034.1	21.2	
	주 차 장	2,637.4	0.6	
	도 로	76,855.2	17.5	보행자전용도로 (1,046㎡) 포함
	공 공 공 지	1,163.3	0.3	
	광 장	556.3	0.1	
	폐 수 종 말 처 리 장	6,481.5	1.5	
	저 류 지	5,340.4	1.2	
녹 지 구 역		43,018.2	9.8	
	공 원	8,241.4	1.9	
	녹 지	34,776.8	7.9	

【별첨 3】 업종별 배치계획도

(기정)



(변경)



표시	구 분	면적(㎡)	구성비(%)
	계	287,717.2	100.0
	식료품	62,080.8	21.6
	섬유제품	8,264.5	2.9
	의복 및 모피제품	8,264.5	2.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80,736.9	28.0
	고무 및 플라스틱	6,612.0	2.3
	비금속 광물	21,192.4	7.4
	금속가공	49,305.9	17.1
	전자부품 및 통신	2,746.9	1.0
	의료 및 시계	2,674.6	0.9
	전기장비	6,800.0	2.4
	기타 기계 및 장비	15,572.5	5.4
	자동차 및 트레일러	4,602.0	1.6
	기타 운송장비	8,946.8	3.1
	기타 제품	9,917.4	3.4

◈◈◈

경상북도 공고 제2020-1361호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경상북도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9일

경 상 북 도 지 사

○ **제공일자** : 2020. 6. 26.(금)

○ **제공받은 기관** : 행정안전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1항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 **이용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인·허가 신청 등 법정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2019. 7. 1. ~ 2020. 5. 31. 기간 중 경상북도에 법정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0년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2020. 11월 예정)

○ **공고기간** : 2020. 7. 6.(월) ~ 2020. 7. 16.(목) / 10일간

○ **공고방법** : 경상북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경상북도 공고 제2020-1362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경 상 북 도 지 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 선 명**	지방도901호선 (구성-상리)
공사의 종류	지방도 가감속차로 설치		
구 간	문경시 마성면 정2리 49-3번지 일원		
공사시행장소	상 동		
착수예정일	2020년 7월	**준공예정일**	2021년 06월 30일
이유 : 솥골 소하천정비사업 관련 마을진입로 지방도 접속에 따른 가감속차로 설치			

◈◈◈

상주시 고시 제2020-200호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연원동 852번지 일원『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문화시설)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9일

상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1) 공공 · 문화체육시설

가) 문화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상주문화예술회관	문화시설	상주시 연원동 852번지 일원	-	증) 32,896	32,896	-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2	상주문화예술회관	• 문화시설 신설 - A = 32,896㎡	• 상주문화예술회관 신축을 통하여 다양한 규모의 공연 및 행사로 다변화하는 문화 수요에 대처하며, 주민들의 문화생활 기회를 증진하고자 함

3.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상주시 도시과(☎054-537-757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고시 제2020-120호

문경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공원-모전5-2 어린이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모전5-2 어린이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9일

문 경 시 장

1. 공원명 : 모전5-2 어린이공원

2. 위 치 : 문경시 모전동 687-1번지

3. 면 적 : 3,054.0㎡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간시설인 공원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1) 공원시설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모전5-2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모전동 687-1번지 일원	2,800	증)254	3,054	00.12. 4	

2) 공원시설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모전5-2 어린이공원	공원면적 변경 기정:2,800㎡→변경:3,054㎡ (증254㎡)	지적정리에 따른 면적정정에 의해 당초 공원면적에서 증가 되었음.

나.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시설계획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기정	2,800.0	100.0	-	-	
	변경	3,054.0	100.0	-	-	증254.0
도로 및 광장	기정	980.0	35.0	-	-	
	변경	577.0	18.9	-	-	감403.0
조경시설	기정	0.0	0.0	-	-	
	변경	113.0	3.7	-	-	증113.0
휴양시설	기정	115.0	4.1	-	-	
	변경	23.0	0.8	-	-	감92.0
유희시설	기정	455.0	16.3	-	-	
	변경	903.0	29.5	-	-	증448.0
녹지	기정	1,250.0	44.6	-	-	
	변경	1,438.0	47.1	-	-	증188.0

2) 시설계획 세부조서

시설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면적(㎡)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총 계			2,800.0	100.0	-	-	21	
변경				3,054.0	100.0	-	-	51	
기정	도로 및 광장			980.0	35.0	-	-	-	
변경				577.0	18.9	-	-	1	
기정	-	도로		705.0	-	-	-	-	
변경	-	도로		187.0	-	-	-	-	
기정	가-1	진입광장1	모전동 685-5	105.0	-	-	-	-	
변경	가-1	진입광장1	모전동 685-5	88.0	-	-	-	-	
신설	①	안내판	모전동 685-5	-	-	-	-	1	
기정	가-2	진입광장2	모전동 687-1	95.0	-	-	-	-	
변경	가-2	진입광장2	모전동 687-1	202.0	-	-	-	-	

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 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 면적		
기정	가-3	진입광장3	모전동 848-10	75.0	-	-	-	-	
변경	가-3	진입광장3	모전동 848-10	56.0	-	-	-	-	
신설	가-4	진입광장4	모전동 690	44.0	-	-	-	-	
기정	조경시설			-	-	-	-	-	
변경				113.0	3.7	-	-	26	
신설	나	아이의원탁	모전동 685-5	113.0	-	-	-	-	
신설	②	테이블	모전동 685-5	-	-	-	-	5	
신설	③	의자	모전동 685-5	-	-	-	-	21	
기정	휴양시설			115.0	4.1	-	-	18	
변경				23.0	0.8	-	-	12	
기정	나	휴게쉼터	모전동 685-5	115.0	-	-	-	-	
변경	다	앉음벽	모전동 685-5	23.0	-	-	-	-	
폐지	①	타원형파고라	모전동 685-5	-	-	-	-	1	
폐지	②	평의자	모전동 685-5	-	-	-	-	9	
기정	③	등의자	모전동 685-5	-	-	-	-	8	
변경	④	등의자	모전동 685-5	-	-	-	-	12	
기정	유희시설			455.0	16.3	-	-	3	
변경				903.0	29.5	-	-	12	
폐지	다	어린이놀이터	모전동 687-1	455.0	-	-	-	-	
신설	라	어린이놀이터	모전동 685-5	903.0	-	-	-	-	
폐지	④	점핑놀이시설	모전동 687-1	-	-	-	-	1	
폐지	⑤	장식벽	모전동 690	-	-	-	-	2	
신설	라-1	경사놀이터	모전동 685-5	383.0	-	-	-	-	
신설	⑤	놀이시설1	모전동 685-5	-	-	-	-	1	
신설	⑥	놀이시설2	모전동 685-5	-	-	-	-	1	
신설	⑦	놀이시설3	모전동 685-5	-	-	-	-	1	
신설	⑧	놀이시설4	모전동 685-5	-	-	-	-	2	
신설	⑨	놀이시설5	모전동 685-5	-	-	-	-	1	
신설	라-2	그루터기놀이터	모전동 685-5	171.0	-	-	-	-	
신설	⑩	놀이시설6	모전동 685-5	-	-	-	-	1	
신설	⑪	놀이시설7	모전동 685-5	-	-	-	-	2	

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 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 면적		
신설	⑫	놀이시설8	모전동 685-5	-	-	-	-	1	
신설	라-3	그물놀이터	모전동 685-5	148.0	-	-	-	-	
신설	⑬	놀이시설9	모전동 685-5	-	-	-	-	1	
신설	라-4	영유아놀이터	모전동 687-1	201.0	-	-	-	-	
신설	⑭	놀이시설10	모전동 687-1	-	-	-	-	1	
기정	녹지			1,250.0	44.6	-	-	-	
변경				1,438.0	47.1	-	-	-	

3) 도로세부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점	종점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소계				136				4개 노선
신설					144				3개 노선
폐지	소로	3	1	6.0	13	진입광장2	소 3-4	-	
신설	소로	3	1	1.2	40	소 3-2	경사놀이터(라-1)	-	
폐지	소로	3	2	6.0	12	진입광장1	소 3-4	-	
신설	소로	3	2	1.5	45	그물놀이터(라-3)	그루터기놀이터 (라-2)	-	
폐지	소로	3	3	5.0	90	진입광장3	소 3-4	-	
신설	소로	3	3	1.2	59	그물놀이터(라-3)	소 3-2	-	
폐지	소로	3	4	5.0	21	소 3-4	소 3-4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도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7. 관계도서는 문경시청 도시과(☏ 054-550-63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문경시 고시 제2020-121호

문경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문경시 모전동 1148번지 일원 모전2-2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9일

문 경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나.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4	모전 2-2공원	어린이 공원	문경시 모전동 1148	2,040.0	-	2,040	문경고시 제1994-10호 (1994.04.14)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규모(㎡)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기 정	2,078.1	100.00	-	-	
	변 경	2,040.0	100.00	-	-	
휴게시설	기 정	337.0	16.22	-	-	
	변 경	205.0	10.05	-	-	
유희시설	기 정	200.0	9.62	-	-	
	변 경	200.0	9.80	-	-	
편익시설	기 정	3.0	0.14		-	
	변 경	3.0	0.15	-	-	
도 로	기 정	498.0	23.96	-	-	
	변 경	400.0	19.60	-	-	
녹 지	기 정	1,040.1	50.06	-	-	
	변 경	1,232.0	60.40	-	-	

2) 세부시설조서

시 설 구 분	도 면 번 호	시설명	부지면적 (㎡)	구성비	건축규모(㎡)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기정	총 계		2,078.1	100.00	-	-	-	
변경			2,040.0	100.00	-	-	-	
기정	휴게시설		337.0	16.22	-	-	-	
변경			205.0	10.05	-	-	-	
기정	휴1	휴게시설1	67.0	3.22	-	-	-	
변경	휴1	휴게시설1	55.0	2.70	-	-	-	
기정	휴2	휴게시설2	90.0	4.33	-	-	-	
변경	휴2	휴게시설2	95.0	4.65	-	-	-	
기정	휴3	휴게시설3	180.0	8.67	-	-	-	
변경	휴3	휴게시설3	55.0	2.70	-	-	-	
기정	유희시설		200.0	9.62	-	-	-	
변경			200.0	9.80	-	-	-	
기 정	편익시설		3.0	0.14	-	-	-	
변 경			3.0	0.15	-	-	-	
기 정	도 로		498.0	23.96	-	-	-	
변 경			400.0	19.60	-	-	-	
기 정	녹 지		1,040.1	50.06	-	-	-	
변 경			1,232.0	60.40	-	-	-	

3) 도로결정조서

구 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 계				224	-	-	
변경					127			
기정	소로	3	1	3~4.5	21	북측입구	휴게시설2	
기정	소로	3	2	3	31	소로3-1	소로3-5	

구 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폐지	소로	3	3	2	30	소로3-2	소로3-8	
폐지	소로	3	4	2	30	소로3-2	소로3-8	
기정	소로	3	5	2	13	소로3-2	소로3-9	
변경	소로	3	4	2	13	소로3-2	소로3-5	
폐지	소로	3	6	2	2	유희시설	소로3-8	
폐지	소로	3	8	2	28	소로3-9	휴게시설2	
폐지	소로	3	9	3~8	10	남측출입구	소로3-10	
폐지	소로	3	10	3~4	25	전기공급설비	남측출입구	
신설	소로	3	3	2.5	15	소로3-2	소로3-6	
신설	소로	3	5	2~5	5	남측입구	소로3-4	
신설	소로	3	6	8	7	소로3-3	소로3-7	
신설	소로	3	7	2.5~3	35	북측출입구	동측출입구	

3. 문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문경시청 도시과(054-550-6324)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의성군 고시 제2020 - 90호

의성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9일

의 성 군 수

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의성 도시지역

1)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	35	주간선도로	3,634	오로리 구역계	철파리 중로1-1	일반도로	2호광장	경고제316호(76.12.31)	
변경	대로	1	1	35	주간선도로	3,010	도서리 대로3-3	철파리 소로1-18	일반도로	2호광장	-	노선단축 가각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대로	3	3	25	주간선도로	624	오로리 구역계	도서리 대로1-1	일반도로	-	-	노선분리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도로	2,652	후죽리 2호광장	중리리 구역계	일반도로	중리동 주거지	경고제316호 (76.12.31)	
변경	대로	3	1	16~25	주간선도로	665	후죽리 2호광장	중리리 소로1-16	일반도로	중리리 주거지	-	노선단축
변경	소로	1	16	10	주간선도로	1,779	중리리 대로3-1	중리리 구역계	일반도로	-	-	노선분리
기정	대로	3	2	25	주간선도로	2,345	중리리 대로3-1	중리리 구역계	일반도로	지곡부락	건고제201호 (84.10.29)	
변경	대로	3	2	25	주간선도로	1,121	중리리 대로3-1	상리리 5호광장	일반도로	지곡부락	-	노선단축
변경	소로	1	17	10	주간선도로	1,170	상리리 5호광장	중리리 구역계	일반도로		-	노선분리
기정	중로	1	1	20	주간선도로	1,350	철파리 대로1-3	업동 구역계	일반도로	철파들	경고제5호 (94.01.05)	-
변경	소로	1	18	10	주간선도로	1,427	철파리 대로1-3	업리 구역계	일반도로	철파들	-	폭원축소 연장증가
기정	중로	2	1	15	주간선도로	3,784	후죽리 대로1-1	도동리 구역계	일반도로	철파들	(76.12.31)	-
변경	중로	2	1	15	주간선도로	2,349	후죽리 소로1-12	도동리 중로3-6	일반도로	-	-	노선단축
변경	중로	2	3	15	주간선도로	84	후죽리 소로2-57	후죽리 소로1-11	일반도로	-	-	노선분리
변경	소로	2	57	8	주간선도로	365	후죽리 대로1-1	후죽리 소로3-74	일반도로	-	-	노선분리
변경	소로	2	58	8	주간선도로	686	도동리 중로3-6	도동리 구역계	일반도로	-	-	노선분리
기정	중로	2	2	15	보조간선 도로	1,329	철파리 중로1-2	원당리 대로1-2	일반도로	-	(91.11.08)	-
변경	중로	2	2	15	보조간선 도로	707	철파리 중로1-2	철파리 소로1-14	일반도로	-	-	노선단축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2	12	보조간선도로	1,036	후죽리 대로1-2	도서리 소로3-72	일반도로	공업단지	건고제201호 (84.10.29)	-
변경	소로	3	78	3	보조간선도로	1,036	후죽리 대로1-2	도서리 294-3	일반도로	공업단지	-	폭원축소 선형변경
폐지	중로	3	3	12	보조간선도로	1,100	후죽리 대로1-1	중리리 대로3-1	일반도로	중로2-1	(76.12.31)	노선폐지
기정	중로	3	6	12	보조간선도로	1,350	도동리 중로2-1	도서리 대로1-1	일반도로	기존 주거지	(76.12.31)	-
변경	중로	3	6	12	보조간선도로	612	도동리 163-1	도서리 대로1-1	일반도로	-	-	노선단축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283	원당리 대로1-2	철파리 소로1-9	일반도로	주거지	경고제43호 (78.02.14)	
변경	소로	3	79	4	국지도로	283	원당리 대로1-2	철파리 소로1-9	일반도로	주거지	-	폭원축소 선형변경
기정	소로	1	9	10	국지도로	494	원당리 대로1-2	철파리 대로1-3	일반도로	공업지	경고제43호 (78.02.14)	
변경	소로	1	9	10	국지도로	188	원당리 대로1-2	철파리 소로3-79	일반도로	-	-	노선단축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182	원당리 소로1-9	원당리 소로2-32	일반도로	-	경고제43호 (78.02.14)	
변경	소로	1	10	10	국지도로	278	원당리 소로1-9	원당리 소로2-32	일반도로	-	-	종점변경 연장정정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412	후죽리 대로1-1	후죽리 중로2-1	일반도로	주거지	경고제263호 (92.08.20)	
변경	소로	1	11	10	국지도로	412	후죽리 대로1-1	후죽리 중로2-3	일반도로	주거지	-	종점명변경
기정	소로	1	12	10	국지도로	484	후죽리 대로1-1	후죽리 중로2-1	일반도로	의성여고	경고제263호 (92.08.20)	
변경	소로	1	12	10	국지도로	484	후죽리 대로1-1	후죽리 중로2-1	일반도로	의성여고	-	가각변경
기정	소로	1	14	10	국지도로	470	철파리 중로2-2	철파리 중로2-2	일반도로	-	의고제55호 (09.10.12)	
변경	소로	1	14	10	국지도로	470	철파리 중로2-2	철파리 중로2-2	일반도로	-	-	가각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철1	10	집산도로	378	철파리 중로2-철1	철파리 중로2-2	일반도로	-	의고제55호 (10.12.09)	
변경	소로	1	철1	10	집산도로	378	철파리 중로2-철1	철파리 중로2-2	일반도로	-	-	가각변경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20	도동리 중로2-1	도동리 소로2-3	일반도로		경고제43호 (78.02.14)	
변경	소로	3	80	4	국지도로	120	도동리 중로2-1	도동리 소로2-3	일반도로		-	폭원축소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390	도서리 소로2-15	도서리 소로2-6	일반도로	중로3-6	경고제43호 (78.02.14)	
변경	소로	2	5	8	국지도로	286	도동리 소로2-23	도동리 소로3-8	일반도로	-	-	노선단축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616	도동리 중로3-8	도동리 소로2-24	일반도로	중로2-1	경고제43호 (78.02.14)	
변경	소로	2	6	8	국지도로	334	도동리 중로3-8	도동리 809-2	일반도로	중로2-1	-	노선단축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164	중리리 중로2-1	중리리 대로3-2	일반도로	의성공고	경고제43호 (78.02.14)	
변경	소로	2	11	8	국지도로	67	중리리 중로2-1	중리리 소로2-50	일반도로	의성공고	-	노선단축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495	도동리 대로1-1	도동리 중로3-6	일반도로	중로2-1	경고제43호 (78.02.14)	
변경	소로	2	15	8	국지도로	232	도동리 대로1-1	도동리 소로2-3	일반도로	중로2-1	-	노선단축
폐지	소로	2	17	8	국지도로	347	중리리 대로3-1	중리리 중로3-3	일반도로	소로3-49	경고제43호 (78.02.14)	노선폐지
폐지	소로	2	18	8	국지도로	724	철파리 중로3-9	철파리 중로3-9	일반도로	소로3-52	경고제43호 (78.02.14)	노선폐지
기정	소로	2	23	8	국지도로	337	도동리 중로3-6	도동리 소로2-15	일반도로	소로3-2	경고제212호 (76.09.23)	
변경	소로	2	23	8	국지도로	337	도동리 중로3-6	도동리 소로2-5	일반도로	-	-	가각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2	24	8	국지도로	154	도동리 소로2-6	도동리 소로3-8	일반도로	배수지	경고제212호(76.09.23)	노선폐지
폐지	소로	2	28	8	국지도로	287	도서리 소로3-72	도서리 중로3-2	일반도로	주거지	경고제43호(78.02.14)	노선폐지
폐지	소로	2	29	8	국지도로	313	후죽리 대로1-1	후죽리 소로2-36	일반도로	북부초교	경고제201호(84.10.29)	노선폐지
폐지	소로	2	30	8	국지도로	135	원당리 대로1-2	원당리 소로1-10	일반도로	공업지	경고제43호(78.02.14)	노선폐지
폐지	소로	2	31	8	국지도로	94	원당리 소로1-10	철파리 소로1-9	일반도로	공업지	경고제43호(78.02.14)	노선폐지
기정	소로	2	32	8	국지도로	270	원당리 대로1-2	철파리 소로1-9	일반도로	소로1-10	경고제43호(78.02.14)	
변경	소로	2	32	8	국지도로	128	원당리 대로1-2	철파리 소로1-10	일반도로	소로1-10	-	노선단축
폐지	소로	2	35	8	국지도로	569	철파리 대로1-1	철파리 대로1-1	일반도로	가중지	경고제201호(84.10.29)	노선폐지
폐지	소로	2	36	8	국지도로	403	후죽리 대로1-1	후죽리 중로2-1	일반도로	후죽리 주거지	군고제1호(00.01.10)	노선폐지
폐지	소로	2	46	8	국지도로	348	후죽리 소로1-12	후죽리 소로2-29	일반도로	북부초교	경고제263호(92.08.20)	노선폐지
기정	소로	2	48	8	국지도로	112	상리리 소로1-13	상리리 대로3-2	일반도로	주거지	경고제263호(92.08.20)	
변경	소로	2	48	8	국지도로	115	상리리 소로1-13	상리리 소로1-17	일반도로	주거지	-	종점변경 연장증가
기정	소로	2	50	8	국지도로	121	중리리 소로2-11	중리리 대로3-1	일반도로	-	(99.03.06)	
변경	소로	2	50	8	국지도로	121	중리리 소로2-11	중리리 대로3-1	일반도로	-	-	가각변경
기정	소로	2	51	8	국지도로	124	원당리 소로1-9	원당리 소로1-7	일반도로	-	(99.03.06)	
변경	소로	2	51	8	국지도로	128	원당리 소로1-9	원당리 소로3-79	일반도로	-	-	종점변경 연장증가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52	8	국지도로	160	후죽리 대로1-1	후죽리 중로3-2	일반도로	-	(76.12.31)	
변경	소로	2	52	8	국지도로	165	후죽리 대로1-1	후죽리 소로3-78	일반도로	-	-	종점변경 연장증가
폐지	소로	2	53	8	국지도로	576	도서리 대로1-1	도서리 대로1-1	일반도로	-	(76.12.31)	노선폐지
기정	소로	2	56	8	국지도로	142	도서리 소로3-8	도서리 중로3-6	일반도로	-	의고제81호 (20.07.01)	
변경	소로	2	56	8	국지도로	101	도서리 소로3-8	도동리 773-20	일반도로	-	-	노선단축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665	도서리 소로1-5	도동리 소로2-24	일반도로	중로2-1	경고제43호 (78.02.14)	
변경	소로	3	8	6	국지도로	673	도서리 소로1-5	도동리 731-2	일반도로	중로2-1	-	연장증가 가각변경
기정	소로	3	21	6	국지도로	176	후죽리 대로3-1	중리리 소로2-10	일반도로	우체국	경고제43호 (78.02.14)	
변경	소로	3	21	6	국지도로	97	중리리 668-21	중리리 소로2-10	일반도로	-	-	노선단축
폐지	소로	3	26	6	국지도로	49	후죽리 대로1-1	후죽리 소로3-42	일반도로	주거지	경고제43호 (78.02.14)	노선폐지
기정	소로	3	33	6	국지도로	331	후죽리 대로3-1	후죽리 중로3-3	일반도로	소로3-24	경고제43호 (78.02.14)	
변경	소로	3	33	6	국지도로	261	후죽리 대로3-1	후죽리 소로3-35	일반도로	소로3-24	-	노선단축
폐지	소로	3	36	6	국지도로	74	후죽리 소로3-35	후죽리 중로3-3	일반도로	주거지	경고제43호 (78.02.14)	노선폐지
기정	소로	3	37	6	국지도로	80	후죽리 1호철도	후죽리 중로3-2	일반도로	공업지	경고제43호 (78.02.14)	
변경	소로	3	37	6	국지도로	95	후죽리 1호철도	후죽리 소로3-78	일반도로	공업지	-	종점변경 연장정정
폐지	소로	3	42	6	국지도로	160	후죽리 대로1-2	후죽리 소로3-26	일반도로	상업지	경고제201호 (84.10.29)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45	6	국지도로	265	중리리 중로2-1	중리리 중로3-3	일반도로	소로2-17	경고제43호 (78.02.14)	노선폐지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3	48	6	국지도로	271	중리리 중로2-1	중리리 중로3-3	일반도로	소로2-17	경고제43호(78.02.14)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49	6	국지도로	283	중리리 중로2-1	중리리 중로3-3	일반도로	중리 주거지	경고제43호(78.02.14)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51	6	국지도로	318	철파리 중로3-9	철파리 소로2-18	일반도로	소로2-22	경고제43호(78.02.14)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54	6	국지도로	83	도동리 소로2-23	도동리 중로3-6	일반도로	주거지	경고제43호(78.02.14)	노선폐지
기정	소로	3	57	6	국지도로	239	도동리 중로3-6	도동리 소로3-75	일반도로	주거지	경고제43호(78.02.14)	
변경	소로	3	57	6	국지도로	121	도동리 중로3-6	도동리 소로3-75	일반도로	주거지	-	노선단축
폐지	소로	3	58	6	국지도로	148	철파리 소로2-35	후죽리 소로2-36	일반도로	후죽리	경고제201호(84.10.29)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59	6	국지도로	148	철파리 소로2-35	후죽리 소로2-36	일반도로	후죽리	경고제201호(84.10.29)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61	6	국지도로	154	철파리 소로2-35	철파리 소로2-36	일반도로	후죽리	경고제201호(84.10.29)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66	6	국지도로	131	중리리 중로3-4	중리리 대로3-2	일반도로	소로2-33	경고제54호(82.04.06)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72	6	국지도로	66	도서리 소로2-28	도서리 중로3-2	일반도로	주거지	경고제43호(78.02.14)	노선폐지
기정	소로	3	74	6	국지도로	766	후죽리 중로2-1	후죽리 160	일반도로	주거지	의고제81호(20.07.01)	
변경	소로	3	74	6	국지도로	766	후죽리 소로2-57	후죽리 160	일반도로	주거지	-	기점명 변경
기정	소로	3	75	6	국지도로	620	도서리 중로2-1	도서리 중로2-1	일반도로	주거지	경고제43호(78.02.14)	
변경	소로	3	75	6	국지도로	306	도동리 329-2	도동리 소로2-58	일반도로	주거지	경고제43호(78.02.14)	노선단축 가각변경

2) 공간시설

(1)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3개소				5,500	감)4,148	1,352		
폐지	4	북부 공원	어린이 공원	의성읍 철파리 47번지 일원	1,500	감)1,500	-	경고제201호 (84.11.02)	
폐지	5	성조 공원	어린이 공원	의성읍 중리리 596번지 일원	2,000	감)2,000	-	경고제201호 (84.11.02)	
변경	8	아사 공원	어린이 공원	의성읍 도동리 771-2번지 일원	2,000	감)648	1,352	경고제201호 (84.11.02)	

(2) 녹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3개소				95,808	감)95,808	-		
폐지	1	철도변 완충녹지	완충 녹지	의성읍 중앙선 철도변	91,628	감)91,628	-	경고제292호 (81.12.29)	
폐지	2	공업지역변 완충녹지	완충 녹지	의성읍 후죽리 공업지역변	2,600	감)2,600	-	건고제201호 (84.10.29)	
폐지	3	공업지역변 완충녹지	완충 녹지	의성읍 원당리 공업지역변	1,580	감)1,580	-	(76.12.31)	

(3) 유원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1개소			82,330	감)82,330	-		
폐지	1	유원지	의성읍 원당리 12번지 일원	82,330	감)82,330	-	건고제201호 (84.10.29)	-

2. 금성 도시지역

1)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	35	주간선도로	3,765	학미리 구역계	산운리 구역계	일반도로	안계초교	건고제515호(73.12.31)	
변경	소로	1	6	11~20	주간선도로	3,765	학미리 구역계	산운리 구역계	일반도로	안계초교	-	폭원축소 선형변경
기정	중로	1	1	20	보조간선도로	275	탑리리 1호광장	대리리 대로1-1	일반도로	소1-1	건고제515호(73.12.31)	
변경	중로	1	1	20	보조간선도로	207	대리리 소로3-29	대리리 소로1-6	일반도로	-	-	노선단축
변경	소로	3	29	6	보조간선도로	92	탑리리 1호광장	대리리 중로1-1	일반도로	-	-	노선분리
기정	중로	2	1	15	보조간선도로	957	탑리리 중로1-1	산운리 중로2-3	일반도로	탑리역	경고제415호(09.9.21)	
변경	소로	2	33	8	보조간선도로	84	산운리 소로2-35	산운리 중로2-3	일반도로	-	-	폭원축소 노선단축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950	대리리 대로1-1	초전리 구역계	일반도로	대리1리	건고제515호(73.12.31)	
변경	소로	3	30	6	집산도로	300	대리리 소로1-3	초전리 구역계	일반도로	대리1리	-	폭원축소 노선단축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1,206	산운리 대로1-1	산운리 구역계	일반도로	-	경고제415호(09.9.21)	
변경	중로	2	3	15	집산도로	254	산운리 소로1-7	산운리 소로2-34	일반도로	-	-	노선단축
변경	소로	1	7	10	집산도로	204	산운리 소로1-6	산운리 중로2-3	일반도로	-	-	노선분리
변경	소로	2	34	8	집산도로	780	산운리 중로2-3	산운리 구역계	일반도로	-	-	노선분리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176	산운리 중로2-1	산운리 중로2-3	일반도로	-	경고제415호(09.9.21)	
변경	소로	2	35	8	집산도로	229	산운리 소로2-2	산운리 중로2-3	일반도로	-	-	폭원축소 연장증가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2,108	탑리리 소로3-22	학미리 구역계	일반도로	탑리2리	건고제515호(73.12.31)	
변경	소로	2	36	8	집산도로	1,584	탑리리 소로2-31	학미리 구역계	일반도로	탑리2리	-	폭원축소 노선단축
기정	중로	3	3	12	집산도로	762	대리리 대1-1	탑리리 소로2-33	일반도로	탑리 여중	경고제219호(02.8.8)	
변경	중로	3	3	12	집산도로	775	대리리 소로1-6	탑리리 소로2-36	일반도로	탑리 여중	-	연장증가 가각변경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000	대리리 대로1-1	탑리리 소로1-2	일반도로	중1-1	경고제112호(74.5.11)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1,000	대리리 소로1-7	탑리리 소로1-2	일반도로	중1-1	-	기점변경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579	탑리리 소로 1-1	탑리리 대로 1-1	일반도로	금성초교	경고제112호(74.5.11)	
변경	소로	1	2	10	국지도로	579	탑리리 소로 1-1	탑리리 소로1-6	일반도로	금성초교	-	종점변경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813	탑리리 대로1-1	대리리 중로2-2	일반도로	-	경고제387호(77.11.15)	
변경	소로	1	3	10	국지도로	818	탑리리 소로1-6	대리리 소로3-30	일반도로	-	-	연장증가 가각변경
폐지	소로	1	4	10	국지도로	305	대리리 대로1-1	대리리 소로2-22	일반도로	대리리 공업지역	경고제328호(90.10.31)	노선폐지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194	대리리 대로1-1	대리리 소로1-3	일반도로	대리리 공업지역	경고제328호(90.10.31)	
변경	소로	1	5	10	국지도로	199	대리리 소로1-6	대리리 소로1-3	일반도로	대리리 공업지역	-	연장증가 가각변경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282	산운리 중로2-1	대리리 소로2-5	일반도로	상업지역	경고제112호(74.5.11)	
변경	소로	2	2	8	국지도로	282	산운리 소로2-35	대리리 소로2-5	일반도로	상업지역	-	가각변경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214	대리리 소로1-1	탑리리 중로2-1	일반도로	소로2-2	경고제112호(74.5.11)	
변경	소로	2	5	8	국지도로	65	대리리 소로1-1	대리리 소로2-2	일반도로	소로2-2	-	노선단축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2	6	8	국지도로	217	탑리리 소로2-29	탑리리 소로2-9	일반도로	소로3-9	경고제112호(74.5.11)	노선폐지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142	대리리 소로1-1	대리리 중로2-1	일반도로	소로2-6	경고제112(74.5.11)	
변경	소로	3	31	5	국지도로	76	대리리 소로1-1	탑리리 1347-1	일반도로	-	-	폭원축소 노선단축
폐지	소로	2	13	8	국지도로	849	대리리 대로1-1	대리리 대로1-1	일반도로	대리2리	경고제112호(74.5.11)	노선폐지
폐지	소로	2	14	8	국지도로	132	대리리 소로2-13	대리리 소로2-13	일반도로	소로3-13	경고제387호(77.11.15)	노선폐지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104	대리리 대로1-1	대리리 소로1-1	일반도로	자동차정류장	경고제387호(77.11.15)	
변경	소로	2	15	8	국지도로	120	대리리 소로1-6	대리리 소로1-1	일반도로	자동차정류장	-	기점변경 연장증가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520	대리리 대로1-1	대리리 구역계	일반도로	명덕교	경고제328호(90.10.31)	
변경	소로	3	32	4~7	국지도로	527	대리리 소로1-6	대리리 구역계	일반도로	명덕교	-	폭원축소 연장증가
폐지	소로	2	18	8	국지도로	701	대리리 소로1-3	대리리 소로1-3	일반도로	소로3-16	경고제387호(77.11.15)	노선폐지
폐지	소로	2	19	8	국지도로	87	대리리 중로2-2	대리리 소로1-3	일반도로	-	경고제387호(77.11.15)	노선폐지
폐지	소로	2	20	8	국지도로	181	대리리 중로2-2	대리리 소로1-3	일반도로	소로1-3	경고제387호(77.11.15)	노선폐지
폐지	소로	2	21	8	국지도로	348	대리리 소로2-13	대리리 소로1-3	일반도로	대리리 공업지역	경고제328호(90.10.31)	노선폐지
폐지	소로	2	22	8	국지도로	350	대리리 소로2-13	대리리 소로2-18	일반도로	대리리 공업지역	경고제328호(90.10.31)	노선폐지
폐지	소로	2	23	8	국지도로	210	대리리 대로1-1	대리리 소로1-2	일반도로	소3-25	경고제328호(90.10.31)	노선폐지
기정	소로	2	24	8	국지도로	191	대리리 중로1-1	대리리 소로3-24	일반도로	소로3-26	경고제328호(90.10.31)	
변경	소로	2	24	8	국지도로	111	대리리 소로3-26	대리리 소로3-24	일반도로	소로3-26	-	노선단축
폐지	소로	2	25	8	국지도로	534	탑리리 중로2-4	탑리리 중로3-2	일반도로	금성중고교	경고제328호(90.10.31)	노선폐지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26	8	국지도로	98	대리리 대로1-1	대리리 소로1-1	일반도로		경고제222호(02.8.31)	
변경	소로	2	26	8	국지도로	105	대리리 소로1-6	대리리 소로1-1	일반도로		-	기점변경 연장증가
폐지	소로	2	29	8	국지도로	216	탑리리 중로3-3	탑리리 중로2-1	일반도로	소로2-6	경고제112호(74.5.11)	노선폐지
기정	소로	2	30	8	국지도로	173	대리리 대로1-1	대리리 소로2-21	일반도로	대리리 공업지역	경고제222호(02.8.31)	
변경	소로	2	30	8	국지도로	178	탑리리 소로1-6	대리리 633	일반도로	대리리 공업지역	-	기점변경 연장증가
기정	소로	2	31	8	국지도로	1,427	탑리리 중로3-2	산운리 구역계	일반도로	-	의고제29호(12.04.30)	
변경	소로	2	31	8	국지도로	1,318	탑리리 소로2-36	산운리 구역계	일반도로	-	-	기점변경 연장정정
기정	소로	2	32	8	국지도로	130	대리리 대로1-1	대리리 소로1-1	일반도로	소로2-28	경고제222호 (02.8.8)	
변경	소로	2	32	8	국지도로	120	대리리 소로1-6	대리리 소로1-1	일반도로	소로2-28	-	기점변경 연장정정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95	산운리 중로2-1	대리리 소로3-6	일반도로	소로3-5	경고제112호(74.5.11)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199	산운리 중로2-3	대리리 소로3-6	일반도로	소로3-5	-	기점변경 연장증가
폐지	소로	3	9	6	국지도로	211	대리리 소로1-1	탑리리 중로2-1	일반도로	소로2-6	경고제112호(74.5.11)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16	6	국지도로	185	대리리 소로1-3	대리리 소로2-18	일반도로	소로3-15	경고제387호(77.11.15)	노선폐지
기정	소로	3	20	6	국지도로	488	산운리 중로2-3	산운리 1호취수장	일반도로	취수장	경고제387호(83.8.20)	
변경	소로	3	20	6	국지도로	488	산운리 소로2-34	산운리 1호취수장	일반도로	취수장	-	기점명변경
폐지	소로	3	22	6	국지도로	69	탑리리 소로2-25	탑리리 중로3-2	일반도로		경고제328호(90.10.31)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23	6	국지도로	69	탑리리 소로2-25	탑리리 중로3-2	일반도로	-	경고제328호(90.10.31)	노선폐지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24	6	국지도로	254	대리리 대로1-1	대리리 소로1-2	일반도로	소로2-24	경고제328호(90.10.31)	
변경	소로	3	24	6	국지도로	258	대리리 소로1-6	대리리 소로1-2	일반도로	소로2-24	-	기점변경 연장증가
기정	소로	3	26	6	국지도로	220	대리리 대로1-1	대리리 소로1-1	일반도로	소로2-24	경고제222호 (02.8.8)	
변경	소로	3	26	6	국지도로	227	대리리 소로1-6	대리리 소로1-1	일반도로	소로2-24	-	기점변경 연장증가
기정	소로	3	28	6	국지도로	128	산운리 소로2-2	탑리리 소로2-5	일반도로	-	경고제222호 (02.8.8)	
변경	소로	3	28	6	국지도로	128	산운리 소로2-2	탑리리 661-2	일반도로	-	-	가각변경

2) 공간시설

(1) 녹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12개소				85,494	감)85,494	-		
폐지	1	녹지	완충녹지	금성면 중앙선 철도변	23,720	감)23,720	-	경고제254호(78.09.07)	-
폐지	2	녹지	완충녹지	금성면 중앙선 철도변	3,400	감)3,400	-	경고제254호(78.09.07)	-
폐지	3	녹지	완충녹지	금성면 중앙선 철도변	2,290	감)2,290	-	경고제254호(78.09.07)	-
폐지	4	녹지	완충녹지	금성면 중앙선 철도변	1,080	감)1,080	-	경고제254호(78.09.07)	-
폐지	5	녹지	완충녹지	금성면 중앙선 철도변	2,300	감)2,300	-	경고제254호(78.09.07)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6	녹지	완충녹지	금성면 중앙선 철도변	1,950	감)1,950	-	경고제254호 (78.09.07)	-
폐지	7	녹지	완충녹지	금성면 중앙선 철도변	5,400	감)5,400	-	경고제254호 (78.09.07)	-
폐지	8	녹지	완충녹지	금성면 중앙선 철도변	34,350	감)34,350	-	경고제254호 (78.09.07)	-
폐지	9	녹지	완충녹지	금성면 중앙선 철도변	1,040	감)1,040	-	경고제126호 (85.06.26)	-
폐지	10	녹지	완충녹지	금성면 산운리 공업지역변	2,140	감)2,140	-	경고제328호 (90.11.06)	-
폐지	11	녹지	완충녹지	금성면 대리리 공업지역변	6,474	감)6,474	-	경고제328호 (90.11.06)	-
폐지	12	녹지	완충녹지	금성면 대리리 공업지역변	1,350	감)1,350	-	경고제328호 (90.11.06)	-

3. 봉양 도시지역

1)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	주간선도로	813	화전리 1호광장	북부 구역계	일반도로	안평천	경고제37호 (75.03.13)	
변경	대로	1	1	35	주간선도로	116	화전리 중로2-3	북부 구역계	일반도로	-	-	노선단축
변경	중로	2	3	17~35	주간선도로	697	화전리 1호광장	화전리 대로1-1	일반도로	-	-	노선분리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2	35	주간선도로	693	남부구역계	화전리1호광장	일반도로	원말들	경고제37호(75.03.13)	
변경	대로	1	2	35	주간선도로	162	화전리중로1-2	화전리1호광장	일반도로	-	-	노선단축
변경	중로	1	2	18~20	주간선도로	523	남부구역계	화전리대로1-2	일반도로	-	-	노선분리
기정	중로	1	1	20	보조간선도로	205	화전리1호광장	화전리중로3-3	일반도로	봉양면사무소	경고제37호(75.03.13)	
변경	소로	2	5	8~14	보조간선도로	205	화전리1호광장	화전리중로3-3	일반도로	봉양면사무소	-	폭원축소선형변경
기정	중로	2	1	15	보조간선도로	470	화전리대로1-1	화전리중로3-1	일반도로		경고제37호(75.03.13)	
변경	중로	2	1	15	보조간선도로	470	화전리중로2-3	화전리중로3-1	일반도로		-	기점명변경
기정	중로	2	2	15	보조간선도로	302	화전리대로1-3	서부구역계	일반도로	안호들	경고제37호(75.03.13)	
변경	소로	2	6	8	보조간선도로	302	화전리대로1-3	서부구역계	일반도로	안호들	-	폭원축소선형변경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1,612	화전리대로1-2	화전리대로1-1	일반도로	-	경고제37호(75.03.13)	
변경	중로	3	1	12	집산도로	1,196	화전리소로3-2	화전리대로1-1	일반도로	-	-	노선단축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1,077	화전리대로1-2	화전리대로1-2	일반도로	-	경고제306호(92.09.25)	
변경	중로	3	2	12	집산도로	290	화전리중로1-2	화전리소로2-4	일반도로	-	-	노선단축기점변경
기정	중로	3	3	12	집산도로	296	화전리대로1-2	화전리중로1-1	일반도로	-	경고제306호(92.09.25)	
변경	중로	3	3	12	집산도로	302	화전리중로1-2	화전리소로1-3	일반도로	-	-	연장증가가각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410	화전리 중로3-3	화전리 중로3-1	일반도로	-	경고제37호(75.03.13)	
변경	소로	1	3	10	국지도로	410	화전리 중로3-3	화전리 중로3-1	일반도로	-	-	가각변경
폐지	소로	1	5	10	국지도로	203	화전리 대로1-2	화전리 중로3-2	일반도로	소로1-6	경고제306호(92.09.25)	노선폐지
폐지	소로	1	6	10	국지도로	419	화전리 중로3-2	화전리 중로3-2	일반도로	소로1-5	-	노선폐지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276	화전리 대로1-3	화전리 중로2-2	일반도로	-	의고제29호(12.04.30)	
변경	소로	1	7	10	국지도로	279	화전리 대로1-3	화전리 소로2-6	일반도로	-	-	종점변경 연장증가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233	화전리 대로1-2	화전리 중로3-1	일반도로	상신제사	경고제337호(77.10.12)	
변경	소로	1	10	10	국지도로	166	화전리 593-5	화전리 601-2	일반도로	-	-	노선단축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586	화전리 북부구역계	화전리 소로1-1	일반도로	봉양중상고	경고제337호(77.10.12)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586	화전리 북부구역계	화전리 소로1-1	일반도로	봉양중상고	-	가각변경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40	화전리 중로3-2	화전리 소로2-3	일반도로	-	의고제556호(07.12.06)	
변경	소로	2	4	8	국지도로	140	화전리 중로3-2	화전리 소로2-3	일반도로	-	-	가각변경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302	화전리 중로3-3	화전리 중로3-1	일반도로	상신금속	경고제337호(77.10.12)	
변경	소로	3	2	6	국지도로	302	화전리 중로3-3	화전리 중로3-1	일반도로	-	-	가각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310	화전리 중로3-1	화전리 소로1-3	일반도로	상신제사	경고제337호(77.10.12)	
변경	소로	3	3	6	국지도로	310	화전리 613-6	화전리 소로1-3	일반도로	상신제사	-	기점명변경
기정	소로	3	24	6	국지도로	365	화전리 중로1-1	화전리 중로2-1	일반도로	-	경고제337호(03.04.25)	
변경	소로	3	24	6	국지도로	365	화전리 1호광장	화전리 중로2-1	일반도로	-	-	가각변경

2) 공간시설

(1)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1개소				113,000	감)113,000	-		
폐지	1	화전공원	근린공원	봉양면 화전리 산27번지 일원	113,000	감)113,000	-	경고제37호(75.03.13)	-

(2) 녹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2개소				7,431	감)7,431	-		
폐지	1	녹지	완충녹지	봉양면 화전리 공업지역변	3,510	감)3,510	-	경고제337호(77.4.29)	-
폐지	2	녹지	완충녹지	봉양면 화전리 간선도로변	3,921	감)3,921	-	경고제306호(92.09.25)	-

4. 안계 도시지역

1)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	25	보조간선도로	2,467	용기리 중로1-3	이연리 구역계	일반도로	삼성중교	경고제337호(77.10.12)	
변경	소로	2	24	8	보조간선도로	2,467	용기리 소로2-26	이연리 구역계	일반도로	삼성중교	-	폭원축소 선형변경
기정	대로	3	3	25	보조간선도로	952	용기리 중로1-3	용기리 1호광장	일반도로	공업지역	경고제337호(77.10.12)	
변경	소로	3	67	7	보조간선도로	591	용기리 소로3-68	용기리 1호광장	일반도로	-	-	폭원축소 노선단축
기정	중로	1	1	20	보조간선도로	1,958	용기리 중로1-3	노연리 대로3-1	일반도로	구천 진입로	경고제337호(77.10.12)	
변경	소로	2	25	8	보조간선도로	780	용기리 소로2-26	용기리 중로2-1	일반도로	구천 진입로	-	폭원축소 노선단축
기정	중로	1	3	20	보조간선도로	3,332	토매리 구역계	정안리 구역계	일반도로	자동차정류장	경고제337호(77.10.12)	
변경	소로	2	26	8~16	보조간선도로	3,332	토매리 구역계	정안리 구역계	일반도로	자동차정류장	-	폭원축소 선형변경
기정	중로	2	1	15	보조간선도로	550	용기리 구역계	노연리 중로1-1	일반도로	-	경고제337호(77.10.12)	
변경	중로	2	1	15	보조간선도로	567	용기리 구역계	용기리 소로2-5	일반도로	-	-	종점변경 연장증가
기정	중로	3	2	12	보조간선도로	1,047	용기리 중로1-3	용기리 중로1-1	일반도로	용기공원	경고제337호(77.10.12)	
변경	중로	3	2	12	보조간선도로	340	용기리 소로2-26	용기리 소로2-8	일반도로	-	-	노선단축 기점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3	12	보조간선도로	1,324	노연리 대로3-1	노연리 대로3-1	일반도로	소로3-47	경고제337호(77.10.12)	
변경	중로	3	3	12	보조간선도로	810	노연리 소로2-24	정안리 소로3-66	일반도로	소로3-65	-	노선단축 기점변경
기정	중로	3	4	12	보조간선도로	574	용기리 중로1-3	용기리 대로3-3	일반도로	공업지역	경고제306호(90.5.15)	
변경	중로	3	4	12	보조간선도로	252	용기리 소로2-26	시안리 소로1-4	일반도로	공업지역	-	노선단축 기점변경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361	시안리 중로1-3	토매리 소로1-2	일반도로	-	경고제337호(77.10.12)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2,361	시안리 소로2-26	토매리 172-2	일반도로	-	-	선형변경 가각변경
폐지	소로	1	2	10	국지도로	275	토매리 중로1-3	토매리 소로2-2	일반도로	소로3-2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170	용기리 대로3-3	토매리 중로3-4	일반도로	공업지역	경고제337호(77.10.12)	
변경	소로	1	4	10	국지도로	170	용기리 954	토매리 중로3-4	일반도로	공업지역	-	가각변경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140	시안리 중로3-4	시안리 소로2-15	일반도로	공업지역	경고제337호(77.10.12)	
변경	소로	1	5	10	국지도로	140	시안리 중로3-4	시안리 소로2-15	일반도로	공업지역	-	가각변경
폐지	소로	1	6	10	국지도로	123	용기리 대로3-3	용기리 소로1-7	일반도로	공업지역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348	용기리 중로1-3	용기리 대로3-3	일반도로	소로1-6	경고제227호(91.06.26)	
변경	소로	3	68	7	국지도로	348	용기리 소로2-26	용기리 소로3-67	일반도로	-	-	폭원축소 가각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178	용기리 중로1-3	용기리 1호자동차정류장	일반도로	-	의고제29호(12.04.20)	
변경	소로	1	11	10	국지도로	178	용기리 소로2-26	용기리 1호자동차정류장	일반도로	-	-	기점명 변경
폐지	소로	2	1	8	국지도로	300	토매리 소로1-1	토매리 중로1-3	일반도로	안계초교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폐지	소로	2	2	8	국지도로	820	토매리 소로1-1	토매리 소로1-2	일반도로	소로3-60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460	용기리 소로1-1	용기리 중로1-1	일반도로	소로2-6	경고제337호(77.10.12)	
변경	소로	2	5	8	국지도로	460	용기리 소로1-1	용기리 중로2-1	일반도로	소로2-6	-	종점변경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430	용기리 중로3-2	노연리 대로3-1	일반도로	청년회의소	경고제337호(77.10.12)	
변경	소로	2	8	8	국지도로	430	용기리 중로3-2	노연리 소로2-24	일반도로	청년회의소	-	종점변경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542	용기리 중로3-2	용기리 소로2-13	일반도로	안계여중고교	경고제337호(77.10.12)	
변경	소로	3	69	4	국지도로	567	용기리 소로3-28	용기리 1059	일반도로	안계여중고교	-	폭원축소 연장증가
폐지	소로	2	10	8	국지도로	430	용기리 소로2-13	용기리 중로3-2	일반도로	소로3-43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폐지	소로	2	11	8	국지도로	280	노연리 중로3-2	노연리 중로1-1	일반도로	소로3-35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폐지	소로	2	13	8	국지도로	475	노연리 소로2-8	용기리 중로1-1	일반도로	안계여중고교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753	시안리 중로1-3	용기리 중로3-4	일반도로	소로1-5	경고제227호(91.06.26)	
변경	소로	2	15	8	국지도로	295	용기리 소로2-26	시안리 소로1-5	일반도로	소로1-5	-	노선단축 기점변경
폐지	소로	2	16	8	국지도로	240	토매리 소로2-1	토매리 소로2-18	일반도로	안계초교	경고제227호(91.06.26)	노선폐지
폐지	소로	2	18	8	국지도로	343	토매리 소로1-1	토매리 중로1-3	일반도로	안계초교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폐지	소로	2	20	8	국지도로	310	용기리 중로1-1	용기리 소로2-1	일반도로	소로2-23	경고제227호(91.06.26)	노선폐지
폐지	소로	2	21	8	국지도로	180	용기리 중로1-1	용기리 소로3-14	일반도로	소로3-13	경고제227호(91.06.26)	노선폐지
기정	소로	2	22	8	국지도로	310	용기리 소로2-5	용기리 중로1-1	일반도로	소로3-25	경고제227호(91.06.26)	
변경	소로	3	70	6	국지도로	79	용기리 소로3-24	용기리 소로2-25	일반도로	-	-	폭원축소 노선단축
폐지	소로	3	1	6	국지도로	226	토매리 소로2-18	토매리 소로1-2	일반도로	-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2	6	국지도로	220	토매리 소로2-18	토매리 소로1-2	일반도로	-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3	6	국지도로	220	토매리 소로2-18	토매리 소로1-2	일반도로	-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6	6	국지도로	131	용기리 소로2-2	용기리 소로3-60	일반도로	양지맨션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7	6	국지도로	65	위양리 소로2-2	용기리 소로3-61	일반도로	소로2-2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10	6	국지도로	298	정안리 중로3-3	노연리 소로3-47	일반도로	소로3-54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3	11	6	국지도로	165	용기리 소로1-1	용기리 소로2-20	일반도로	소로2-19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12	6	국지도로	571	노연리 소로3-65	노연리 대로3-1	일반도로	소로3-47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기정	소로	3	13	6	국지도로	238	용기리 소로1-1	용기리 소로2-21	일반도로	소로3-16	경고제337호(77.10.12)	
변경	소로	3	13	6	국지도로	97	용기리 소로1-1	용기리 475-20	일반도로	-	-	노선단축
기정	소로	3	14	6	국지도로	346	용기리 소로2-3	용기리 중로1-3	일반도로	소로3-16	경고제337호(77.10.12)	
변경	소로	3	14	6	국지도로	113	용기리 소로2-3	용기리 469-1	일반도로	-	-	노선단축
기정	소로	3	15	6	국지도로	236	용기리 소로3-17	용기리 중로1-3	일반도로	소로3-62	경고제337호(77.10.12)	
변경	소로	3	15	6	국지도로	240	용기리 842-30	용기리 소로2-26	일반도로	-	-	종점변경 연장증가
폐지	소로	3	16	6	국지도로	325	용기리 소로3-15	용기리 중로1-1	일반도로	한전안계출장소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기정	소로	3	17	6	국지도로	342	용기리 소로3-13	용기리 소로3-18	일반도로	소로3-15	경고제337호(77.10.12)	
변경	소로	3	17	6	국지도로	90	용기리 842-30	용기리 소로3-18	일반도로	-	-	노선단축 가각변경
기정	소로	3	18	6	국지도로	268	용기리 소로2-3	용기리 중로1-3	일반도로	한광맨션	경고제337호(77.10.12)	
변경	소로	3	18	6	국지도로	78	용기리 소로2-3	용기리 소로3-17	일반도로	한광맨션	-	노선단축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3	22	6	국지도로	391	용기리 대로3-1	용기리 중로3-2	일반도로	근린공원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기정	소로	3	24	6	국지도로	80	용기리 소로2-6	용기리 소로2-22	일반도로	-	경고제337호(77.10.12)	
변경	소로	3	24	6	국지도로	80	용기리 소로2-6	용기리 소로3-70	일반도로	-	-	종점변경
폐지	소로	3	25	6	국지도로	196	용기리 소로2-6	용기리 중로1-1	일반도로	소로2-22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기정	소로	3	28	6	국지도로	73	용기리 중로3-2	용기리 소로3-31	일반도로	-	경고제337호(77.10.12)	
변경	소로	3	28	6	국지도로	73	용기리 소로3-69	용기리 소로3-31	일반도로	-	-	기점변경
기정	소로	3	30	6	국지도로	265	용기리 소로3-31	용기리 소로1-3	일반도로	소로3-29	경고제337호(77.10.12)	
변경	소로	3	30	6	국지도로	265	용기리 소로3-31	용기리 소로1-3	일반도로	소로3-29	-	가각변경
기정	소로	3	31	6	국지도로	669	용기리 소로1-1	용기리 중로1-1	일반도로	안계종합중고교	경고제337호(77.10.12)	
변경	소로	3	31	6	국지도로	235	용기리 소로1-1	용기리 소로3-30	일반도로	안계종합중고교	-	노선단축
폐지	소로	3	32	6	국지도로	186	용기리 소로3-42	용기리 중로3-2	일반도로	-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35	6	국지도로	85	용기리 소로2-11	용기리 소로3-31	일반도로	-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38	6	국지도로	70	용기리 소로2-9	용기리 소로3-32	일반도로	-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39	6	국지도로	115	용기리 소로2-8	용기리 소로2-9	일반도로	-	경고제337호(77.10.12)	
변경	소로	3	39	6	국지도로	62	용기리 소로2-8	용기리 859	일반도로	-	-	노선단축
폐지	소로	3	42	6	국지도로	590	용기리 소로2-13	노연리 중로1-1	일반도로	안계여중고교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43	6	국지도로	274	용기리 소로2-9	노연리 중로1-1	일반도로	소로2-10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44	6	국지도로	350	용기리 중로3-2	노연리 중로1-1	일반도로	소로3-43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기정	소로	3	47	6	국지도로	779	노연리 중로3-3	노연리 중로3-3	일반도로	소로2-12	경고제337호(77.10.12)	
변경	소로	3	47	6	국지도로	140	노연리 중로3-3	노연리 603	일반도로	-	-	노선단축
폐지	소로	3	48	6	국지도로	85	노연리 중로3-3	노연리 소로3-50	일반도로	-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50	6	국지도로	78	노연리 소로3-48	노연리 소로3-51	일반도로	-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51	6	국지도로	90	노연리 소로3-50	노연리 소로3-65	일반도로	-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52	6	국지도로	90	노연리 소로3-47	노연리 소로3-51	일반도로	-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54	6	국지도로	251	정안리 중로3-3	정안리 소로3-12	일반도로	소로3-10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56	6	국지도로	75	정안리 소로3-12	정안리 중로3-3	일반도로	-	경고제337호(77.10.12)	노선폐지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59	6	국지도로	64	토매리 소로2-2	토매리 소로3-60	일반도로	-	경고제221호(02.08.08)	
변경	소로	3	59	6	국지도로	64	토매리 208-4	토매리 소로3-60	일반도로	-	-	기점명 변경
기정	소로	3	60	6	국지도로	328	토매리 소로1-1	토매리 소로2-2	일반도로	소로3-6	경고제221호(02.08.08)	
변경	소로	3	60	6	국지도로	328	토매리 소로1-1	토매리 203-1	일반도로	-	-	종점명 변경
기정	소로	3	62	6	국지도로	123	용기리 소로3-18	용기리 소로3-15	일반도로	-	경고제221호(02.08.08)	
변경	소로	3	62	6	국지도로	123	용기리 456-86	용기리 소로3-15	일반도로	-	-	가각변경
기정	소로	3	63	6	국지도로	210	용기리 중로3-2	용기리 소로3-18	일반도로	-	경고제221호(02.08.08)	
변경	소로	3	63	6	국지도로	210	용기리 중로3-2	용기리 소로3-18	일반도로	-	-	가각변경
기정	소로	3	64	6	국지도로	68	노연리 대로3-1	노연리 소로3-47	일반도로	소로3-47	경고제221호(02.08.08)	
변경	소로	3	64	6	국지도로	70	노연리 소로2-24	노연리 573-1	일반도로	-	-	기점변경 연장증가
기정	소로	3	65	6	국지도로	330	정안리 중로3-3	정안리 소로3-12	일반도로	소로2-12	경고제221호(02.08.08)	
변경	소로	3	65	6	국지도로	330	정안리 중로3-3	노연리 738-11	일반도로	소로3-66	-	가각변경
기정	소로	3	66	6	국지도로	1,121	노연리 대로3-1	정안리 구역계	일반도로	소로3-47	경고제337호(77.10.12)	
변경	소로	3	66	6	국지도로	1,121	노연리 소로2-24	정안리 구역계	일반도로	-	-	기점변경 연장증가

2) 공간시설

(1)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1개소				66,846	감)35,963	30,883		
변경	2	노연공원	근린공원	단북면 노연리 381번지 일원	66,846	감)35,963	30,883	경고제337호 (77.10.12)	-

나. 실효일자 : 2020. 7. 1

다. 실효사유 : 군계획시설사업 미 시행

라. 지형도면 : 붙임 참조

마. 관계도서는 의성군청 지역재생과(☏054-830-634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성주군 고시 제2020-64호

성주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1539번지 일원의 성주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9일

성 주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 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2,306	-	32,306	10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성2	성주 성산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1539번지 일원	-	증)32,306	32,306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비고
성2	성주 성산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A = 32,306㎡	• 참외유통판매를 위해 필요한 시설들을 집적화하여 통합관리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	

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2,306	100.0	
공업용지	공업시설용지	3,690	11.4	
유통용지	유통시설용지	19,319	59.8	
녹지용지	완충용녹지	6,299	19.5	
공공시설용지	도로	2,998	9.3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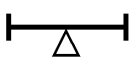
도 면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총 계		23,279		23,279	
A	1	3,960	성주읍 성산리 1545번지 일원	3,960	공업용지
B	1	19,319	성주읍 성산리 1539번지 일원	19,319	유통용지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A	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농산물가공공장,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불허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최고높이	◦ 4층 이하	
			최저높이	-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형태		-	
		색채		◦ 주변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기타		-	
B	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과점 제외), 제7호의 판매시설,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불허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최고높이	◦ 4층 이하	
			최저높이	-	
		형태		-	
		색채		◦ 주변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기타		-	

4) 교통처리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허용구간		지방도 905호선에 접하는 대상지의 주출입구를 차량출입 허용구간으로 계획하여 시설이용의 편의를 도모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서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성주군청 도시건축과(☏054-930-65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경주시 공고 제2020 - 1587호

도시계획시설[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열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9일

경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주시 하동 27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 명 칭 :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 A=24,770㎡, 소로2-152호선(B=8m, L=360m)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경주시장 주낙영

○ 주 소 :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청)

5. 사업의 시행기간

○ 실시계획 고시일 ~ 2021. 12. 31

6. 열람기간 : 2020년 7월 09일 ~ 2020년 7월 28일(토 · 일 · 공휴일 제외 14일간)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8.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경주시청 관광컨벤션과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청) 증축관 4층 ☏779-6786)

9.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사업]

연번	토지소재지			당초 내역		지목	편입 내역		지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시구군	읍면동	산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경주시 하동					26,957			24,770						
1	경주시	하동		207	74	답	207	74			경주시			
2	경주시	하동		271 - 1	14,900	임	271 - 1	14,900			경주시			
3	경주시	하동	산	101 - 5	522	임	101 - 5	407			경주시			
4	경주시	하동	산	102	1,360	임	102	1,360			경주시			
5	경주시	하동	산	103 - 5	4,756	임	103 - 5	3,410			경주시			
6	경주시	하동	산	104	1,851	임	104	1,851			경주시			
7	경주시	하동	산	104 - 2	529	임	104 - 2	529			경주시			
8	경주시	하동	산	115	2,965	임	115	2,239			경주시			

구미시 공고 제2020 - 1138호

구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완료 공고

구미시 구포동 1191번지 일원 구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공고합니다.

2020. 7. 9.

구 미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119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명 칭 : 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3. 사업의 규모	

구 분	규모 및 내역	면적(㎡)	비 고
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소 계	27,268.4	
	·체육시설	15,671	
	·주차장	4,696	
	·녹지	3,339.5	
	·통행로	1,553	
	·건축물 (건물 2개동 증축)	1,873.9	
	·기타	135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 성 명 : 구미시장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03월 16일 ~ 2020년 06월 30일
6. 공사완료일	○ 2020년 06월 30일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 - 32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 7. 9.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안동시장(안전재난과)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옥야동 398-1번지 일원 면적 : 95㎡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낙동강(영호대교옆) 진·출입로 계단 설치 시설개요 : 스톤네트(계단형) B=4.0m, L=20.5m
점용 기간	2020년 7월 7일부터 2025년 7월 6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329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0. 7. 9.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금호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셀파이엔씨(주)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8길 9 정현리치빌 3층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 921-25번지 외 8필지 일원 면적 : 1,994.4㎡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우기철 및 현장여건상 조사지연 시설개요 : 육상시추 2개소 : 48㎡, 수상시추 3개소 : 275.4㎡ Barge선 조립 · 해체 부지 : 1,671㎡
점용 기간	당초: 2020년 6월 16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변경: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

구미소방서 공고 제2020-9호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위반 과태료 예고서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바 폐문부재 및 거주지 불명 등소방관계법령 위반자의 비협조적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0. 7. 9.

구 미 소 방 서 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예고번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제2020-54호	박O찬(SS호텔)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OOO	19OO.OO.15.(남)

2. 위 반 행 위 :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보고서 지연 보고(30일 미만)

3. 적 용 법 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4. 과태료 금액 : 금300,000원(금삼십만원)

5. 산 출 근 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 2. 개별기준 파목.1)

6. 의견제출 및 자진 납부기한 : 2020.07.31.(금)

7. 참 고 사 항

가. 상기 이의제기 제출일까지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납부기한 내 미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차량압류 및 공매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거 다음 각목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중가산금(매월 1.2%) 부과

2)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4)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 문의사항 :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 : 054-440-0145

붙임 1. 소방관련 법령 위반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2. 이의제기서 1부. 끝.

과 태 료 납 부 통 지 서

납 부 기 한		2020. 7. 31.	납 부 금 액	300,000원 (금삼십만원)
위반자	성 명 (대 표 자)	SS호텔(박O찬)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19OO.OO.15. (216-34-OOOOO)
	소 재 지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OOO		
위반사항	적용법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위반내용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보고서 지연 보고(30일 미만)		
	산출근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 2. 개별기준 파목.1)		

1.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납부통지하오니 2020년 7월 31일까지 **은행, 인터넷(www.giro.or.kr) 에 붙임 OCR카드(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3.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거 다음 각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중가산금(매월 1.2%)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2020년 7월 2일

경상북도 구미소방서 징수관

이 의 제 기 서

위 반 자	주 소			
	성 명		법인등록번호	
	전 화		휴 대 전 화	
과 태 료 예고내용	예고기관		예 고 번 호	
	통지일자		예 고 금 액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 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오니 과태료 부과에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의견진술인 (인)

구미소방서장 귀하

새바람 행복 경북!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세상